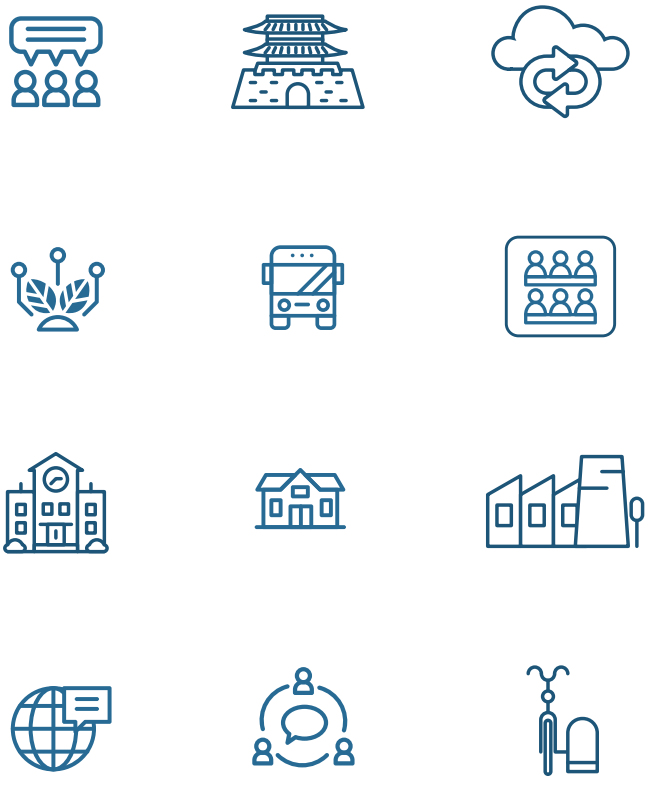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12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 7

2.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 11

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 ····· 14

4. 2026년도 지방시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지방시대위원회] ····· 17

5.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23

6.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합동] ····· 33

7.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인공지능분야) 발표 [관계부처합동] ···· 47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아동·청소년 삶의질 연구 동향 [국가통계연구원] ····· 57

2.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 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 68

목 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3. 진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언 [전북연구원] ····· 72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76

5.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7

6.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 95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의 집행 가능성 재고 및 지역주도 사업추진체계 수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03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11

3.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 [교육위원회] ····· 118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11.4.)을 통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 유형을 8개로 확대함. 이는 **논 타작물, 친환경농업 등 지역 특화작물**을 지구 단위에서 계획·관리하고,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이 지구를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함. 논 타작물,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 방식**이나 **지역 특화작물**을 지구 단위로 묶어 **계획적 관리 및 맞춤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공간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현재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특성화농업지구는 이 계획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임

2 근거 법률 및 제도

○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임

- **시행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4일 해당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됨

  * (현행) 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 **지정**: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공간을 기능별(주거, 산업 등)로 구분하며,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음

3 주요 내용

가. 지구 지정 및 활용 유형

○ 신설된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임

- **주요 활용 형태: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
- **유형 확대**: 이번 신설로 기존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지구** 등 7개였던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8개로 확대됨

나. 집중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방침

○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을 집중하고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집중 지원 대상**: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함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 투자함
- **연계 강화**: 인접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다른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 이는 지역 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4 시사점

○ 이 제도의 가장 큰 시사점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으로, 특성화 농업지구는 단순한 재배단지를 넘어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다른 특화 지구와의 **연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

* '6차 산업화'는 농업의 1차 산업(생산)에 2차 산업(가공/제조)과 3차 산업(유통/체험/관광)을 융합하여 농촌 지역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경제를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함을 의미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농촌사회활력과]

○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은 농촌공간을 효율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함. 이 제도는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 계획을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임

○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논 타작물·친환경농업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전북도는 **쌀 외 논 타작물, 특용작물, 친환경 농업 등 강점 품목**을 중심으로 특성화농업지구 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가공 및 유통 시설의 유치**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의 연계**를 우선하여 추진해야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전북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사례와 같은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성화농업지구 모델을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

> ※ 전북 고창군의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은 2024년 매출액 2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 출범 이후 누적 매출액은 **56억 7,200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함. 이는 **복분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유통 및 가공 부문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최신 6차산업화 연계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음 (고창군 보도자료 인용, 20241023)

○ 전라남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동향을 보임('25.10.)

○ 국가 법률에 근거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광역 단위 가이드라인**과 도비 지원 비율 및 방식 등 재정 근거를 구체화해야 함. 지역 농업 구조를 반영한 특화 지구 지정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를 전담할 도 단위 위원회 등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참고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25.10.16.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방향)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군이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
2. 시·군별 특화 지구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 구축
2. 공동·관리 시설 조성
3. 지구별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
4.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5.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우수사례 홍보
7.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성과 관리 및 평가)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5.11.)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2025.11.27.). 이 법률 제정에 따라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상승분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법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해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나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이러한 지원은 가격 급등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함. 법의 목적은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데 있음

2 근거 법률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26.12. 시행)

*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등으로, '농업용 에너지'는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로 정의되며, 이를 통칭하여 '필수농자재 등'이라 함

3 제정안 주요 내용

가.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4조)

○ **(목적)**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

○ **(정의) 비료, 사료** 등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를 **'필수농자재등'**으로 **약칭**

나.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가격 상승에 따른 사전 대응 및 지원 체계 규정 (안 제5조~제13조)

○ **(위기대응지침)**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 대응 지침*** **작성·운용**

* 예시 : (1단계)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2단계)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할당관세 적용, (3단계)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4단계) 가격인상 차액 지원

○ **(필수농자재등 지원)**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상승** 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다만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격·산정근거·물량,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별 재고물량,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 구입가격·물량 등

○ **(온실가스 감축 등 지원)**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우대 및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 자금 융자·보조 지원

다. 부정수급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절차 등 (안 제14조~제19조)

○ **(점검 및 환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상황 점검, 부정수급자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제외

4 시사점

○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은 기존의 **사후적·한시적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함

○ 또한, 지원금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달하도록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감시하는 장치를 제도화**하고,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의 국가적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임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스마트농산과]

○ 전북자치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의 핵심지**이자 **축산 비중**이 높아,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에 취약한 지역임. 따라서 이번 법률 제정은 지역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전북자치도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2024.5.31.시행)를 운영하며, 지방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 경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왔음

> **※ 2025년 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현황**
> - (농업용 면세유) 84,570천 L, 74.3억 원(도비 22.2억, 시군비 52억)
> - (무기질비료) 123,462톤, 110억 원(국비 33억, 도비 66억, 시군비 15.4억, 농협 33억, 자담 22억)

○ 향후, 법 시행일(**2026.12. 예정**)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연계하여 **도 조례 정비 및 제도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건의하고, 2026년에도 도 자체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임

○ 법률상 타 법령·조례에 따른 **유사 지원 시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도 자체 사업이 법 시행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조정**하고 중앙정부와의 매칭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농식품부의 가격 동향 예측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 위험을 관리하고,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 방지 등 지역 내 점검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임

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완화함. 이는 소규모 사업장(약 6.6만여 곳)에 **호출 벨 등 대체 수단 사용을 허용**하여, 장애인 접근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모색함. 기존 6개 편의 기준이 완화되고 유연성이 부여됨. 전북특별자치도는 높은 고령화율을 고려하여 이 유연성을 **지역 복지와 연계한 전북형 디지털 포용체계 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키오스크가 행정, 금융, 상업 등 생활 전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장애인 및 고령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 기존 키오스크 설치 의무 기준(6개 편의 기준 모두 충족)은 임차인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장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구조물 설치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을 겪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기준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

2 근거 법률 및 제도

○ 이번 키오스크 설치 기준 완화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근거함. 해당 개정령안은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됨

○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3 주요 내용

가. 의무 기준 단순화 및 완화

○ 기존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모두 충족해야 했던 6개 편의 기준**(휠체어 접근성, 점자 블록, 수어/문자/음성 지원 등)이 단순화됨

기존	변경
■ (원칙적 조치) 아래 여섯가지 모두 충족	■ (원칙적 조치)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① 과기부 검증기준*	① 과기부 검증기준 ▶ 유지
② 휠체어 접근성	② 휠체어 접근성 ▶ 삭제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 삭제
④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④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 음성안내장치 유지
⑤ 한국수어·문자·음성	⑤ 한국수어·문자·음성 ▶ 삭제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삭제
* (과기부 검증기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 **주요 의무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단말기 설치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함

나. 영세사업장 대상 예외 규정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 **약 6.6만여 개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이 포함됨. 다음 대상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기존	변경
■ (예외적 조치) 접근성 개선 방식 선택 가능	■ (예외적 조치) 대상·기기별 선택 가능성 확대
1) 대상	**1) 대상**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②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③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기부고시)
2)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2) 내용**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①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 등 6가지 원칙적 조치 이행	①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호환 보조기기·SW 설치	② 호환 보조기기 또는 SW 설치
③ 보조인력 배치	③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 **예외 대상**: 바닥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 설치 장소

- **선택 방식:** ① 검증 기준을 준수한 단말기 및 음성 안내 장치 설치, ②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③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 벨 설치**

4 시사점

○ 이번 개정은 **'디지털 포용'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함. 획일적인 법규 적용 대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임**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과 **높은 소상공인 비중**을 지닌 지역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적응 및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권을 지역 복지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함

○ 이번 키오스크 기준 완화 정책은 **지역 여건에 맞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함. 복지부가 대체 수단(호출 벨, 직원 응대 등 휴먼서비스)을 공식 인정한 만큼, 전북도는 이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습득이 어려운 고령층과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의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실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현재 공공부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하여 제도가 '종이 위의 의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이 요구됨[1)]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확산 모델'**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표준모델 도입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함. 민간 다중이용시설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규제 준수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차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임

---

1) 제423회 전북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2025. 12. 15.

4. 2026년도 지방시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지방시대위원회, '25.12.8.)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5극3특 기반의 다핵 국토 체계로 전환, 국가 경쟁력을 전국으로 확산
◇ 산업·인재·교통·정주가 결합된 권역 성장 플랫폼 구축, 지역별 성장엔진 중심의 균형성장 실현
◇ 기업투자·첨단도시·메가특구·교통망 등 초광역 단위 대전환 추진, 지방의 경제·생활 기반 강화
◇ 행정·재정·자치·거버넌스 전면 개편으로 지방우대 국가체계로 재설계, 지방 주도 성장 기반 마련

□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육성

○ (성장엔진 선정) '26년 3월까지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및 중앙-지방 공동 성장 추진

○ (패키지·산업전환 지원) R&D·입지·규제·세제·펀드 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민간투자 촉진



□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 (투자·R&D 지원) 기업 이전·신설을 위한 세제·입지·규제 완화와 5극3특 연계 지역특화 R&D 지원 확대

○ (정착 지원)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교육 등 정주환경 패키지 개선 등



□ 지역인재 양성(서울대 10개 → KAIST · POSTECH 10개)

○ (첨단 인재양성 기반 확충) 권역별 첨단 교육·연구기관을 카이스트·포스텍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스타트업·투자·산업다각화) 모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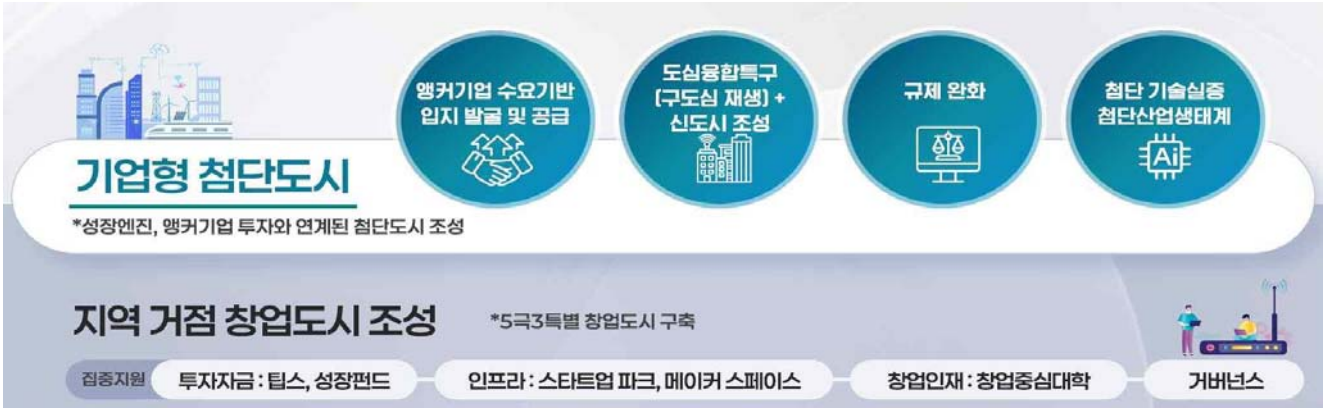
○ (RISE·산학협력 강화)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기업·지자체 공동투자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기업형 첨단도시 · 창업도시 조성

○ (첨단·창업도시 조성) 앵커기업 중심의 입지·규제·기술·인프라를 연계한 첨단도시 및 스타트업 허브 구축으로 지역 혁신·투자 생태계 활성화

○ (도심융합특구 연계) 구도심 재생과 산업공간 복합 조성을 통해 청년·기술 기반 지역 활력 회복



□ 메가특구 도입

○ (권역 맞춤 특례 설계)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초광역 특례 설계 및 규제·R&D·인프라·사업화 등 특례 패키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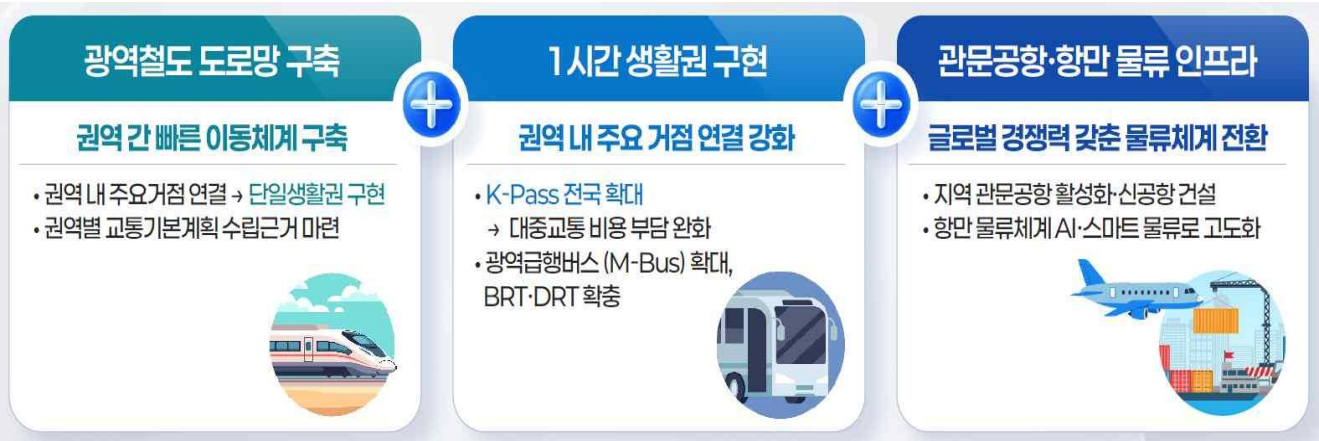
○ (협약 기반 추진체계)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협약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투자·성장 프로젝트 추진



□ 1시간 생활권 및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 (광역교통망 확충) 권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도로망 구축과 K-Pass 전국 확대 등 교통비 경감으로 단일 생활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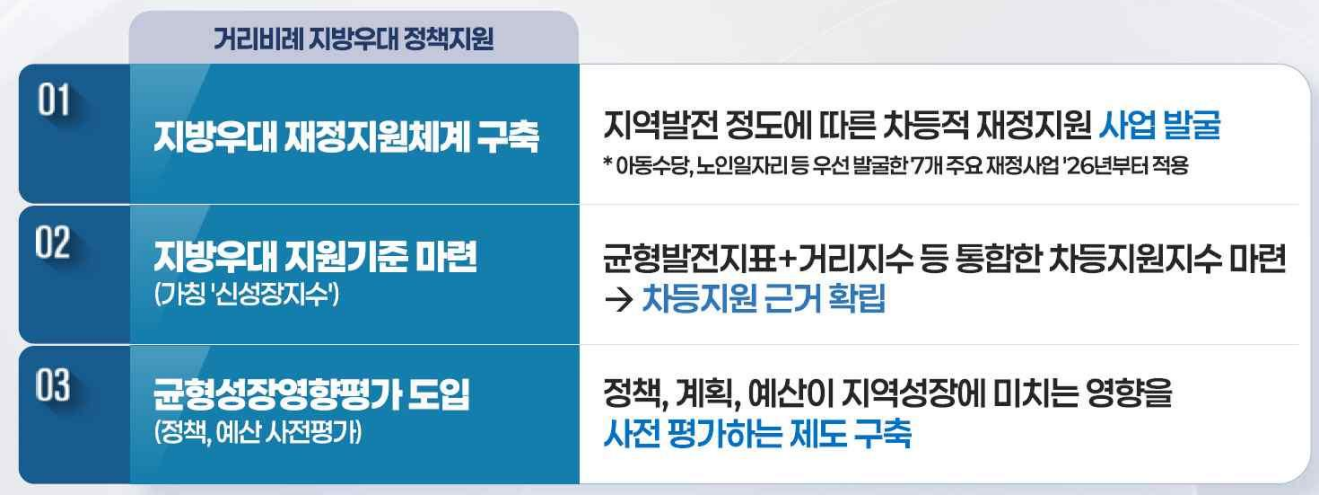
○ (공항·항만 고도화) 지역 관문공항 활성화 및 항만물류체계의 AI 기반 스마트물류 전환



□ 지방우대 재정 · 정책지원체계 구축

○ (지방우대 재정·기준 구축)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 재정지원과 균형지표·거리·인구 기반의 지방우대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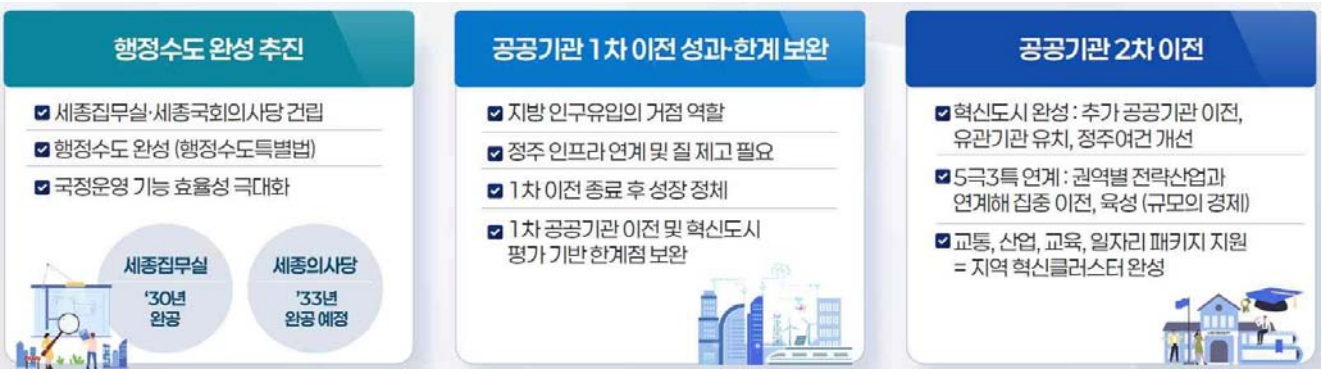
○ (균형영향평가 도입) 국가정책의 지역 성장 영향 사전 검토 제도 도입



□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 (행정수도 완성·1차 이전 보완)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유관기관 추가 이전으로 한계를 보완

○ (2차 공공기관 이전)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재설계



□ 5극3특 실행체계 확립

○ (특별협약·계정 구축) 초광역특별협약·지역발전특별투자협약 도입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지원 및 재원 기반 확보

○ (포괄보조사업 확대) '26~'30년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 재량·자율성 강화

* (예산규모) '25년 3.8조원→'26년 10.6조 / (사업수) '25년 47개→'26년 121개



□ 지방정부 권한·재정분권 및 주민자치 혁신

○ (권한·재정분권 확대) 생활밀착형 사무 일괄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 7:3 상향 및 지방교부세율 확대 등 지방 자율성 강화



○ (주민자치 혁신) 주민자치회 법제화, 읍면동장 공모·개방형 전환,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체계 구축



5.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5.11.26.)

◇ '24년 교통약자 수는 1,613만 명, 고령자의 증가로 총인구의 31.5%
◇ 도 지역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79.3%, '22년 대비 4.2%p 증가
◇ 저상버스(시내) 15,743대로 '23년 대비 2,143대 증가, 전국보급률 44.4%
◇ 특별교통수단 4,896대로 296대 증가

1 조사 대상

□ 대상 : 9개 도·특별자치도 교통수단·여객시설 등

○ **교통수단** : [도 단위] 버스(5,420대)
[전국 단위] 도시·광역철도차량(9,350칸), 철도차량(278칸), 항공기(368대), 여객선(151척), 궤·삭도 차량(43개소)

○ **여객시설** : [도 단위] 여객자동차터미널(141개소), 철도역사(32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981개소), 공항(8개소), 여객선터미널(17개소), 버스정류장(546개소), 궤·삭도 정류장(43개소)

○ **보행환경** : [도 단위] 788개소

2 교통약자 현황 : '23년 대비 약 26만명 증가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30.9%) 대비 약 26.4만 명 증가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교통약자 인구 추이(백만 명)>



○ 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음

3 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4.2%p 증가

□ '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으며,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임

*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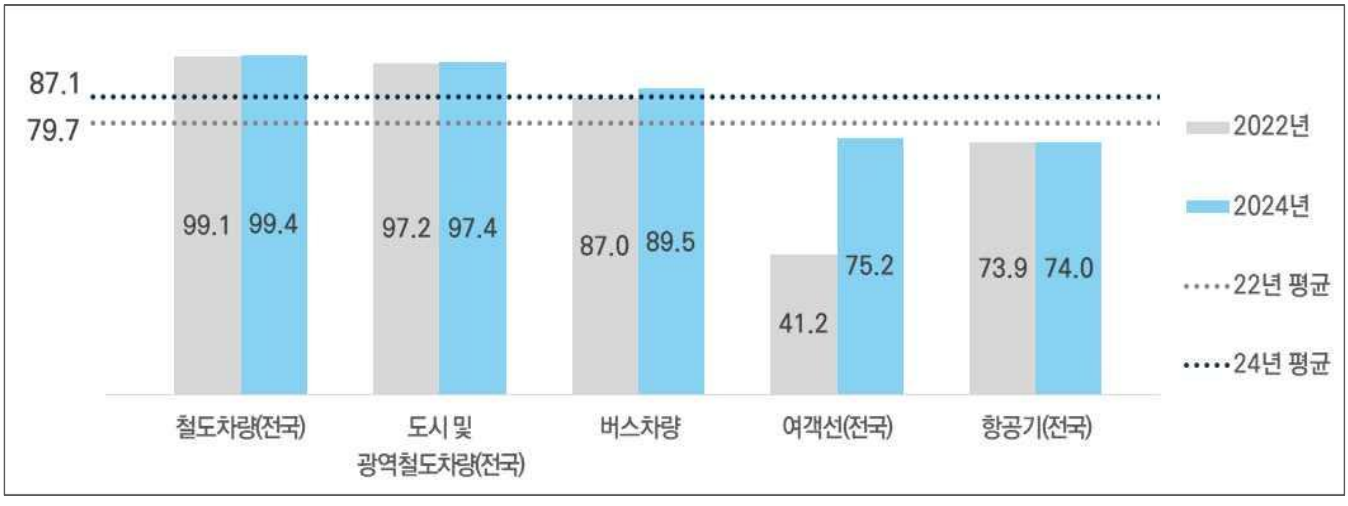
** (도·특별자치도 기준적합설치율) 72.1%('20년) → 75.1%('22년) → 79.3%('24년)

1. 교통수단[탈 것]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7.4%p 증가

□ '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신규 조사대상인 궤도·삭도 제외한 수치)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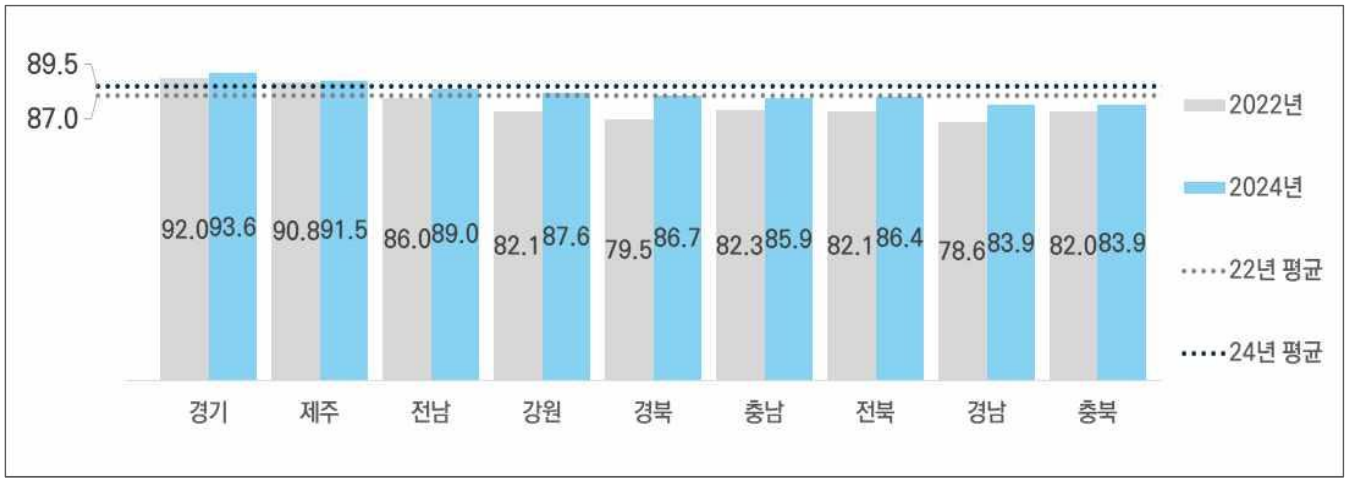
*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등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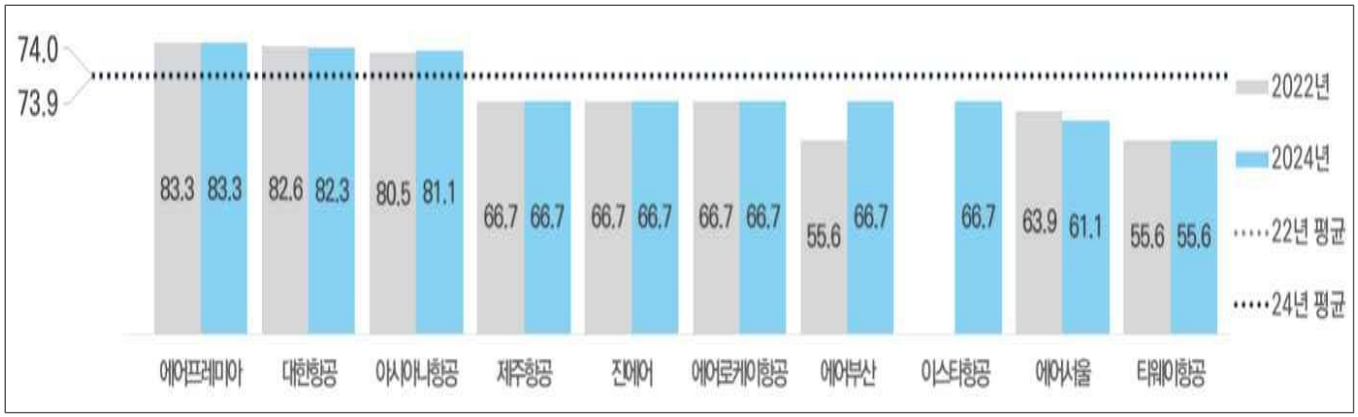
○ (버스 차량) 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고,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버스차량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율(%)>



○ (항공기)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

<항공사별 항공기 기준적합 설치율(%)>



* '22년 이스타항공은 COVID-19로 운영을 중단하여 조사대상 미포함

○ (여객선) 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고,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20년~'23년)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음

○ (궤도 및 삭도차량)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음

<궤도 및 삭도차량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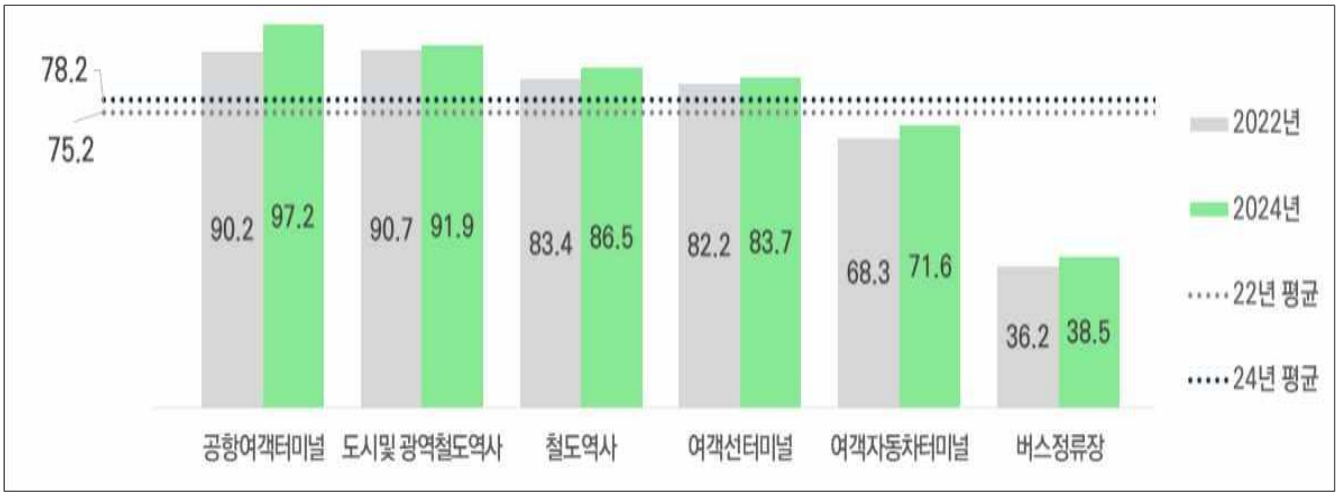
* 제주는 궤·삭도 시설 미존재

2. 여객시설(건물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3.0%p 증가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 (신규 조사대상인 궤도·삭도 정류장을 제외한 수치)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출입구, 승강기, 교통약자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 임산부 휴게시설 등 23개 항목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



○ (여객자동차터미널) 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고,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음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



○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고,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음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



○ (철도 역사) 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고,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음

<지역별 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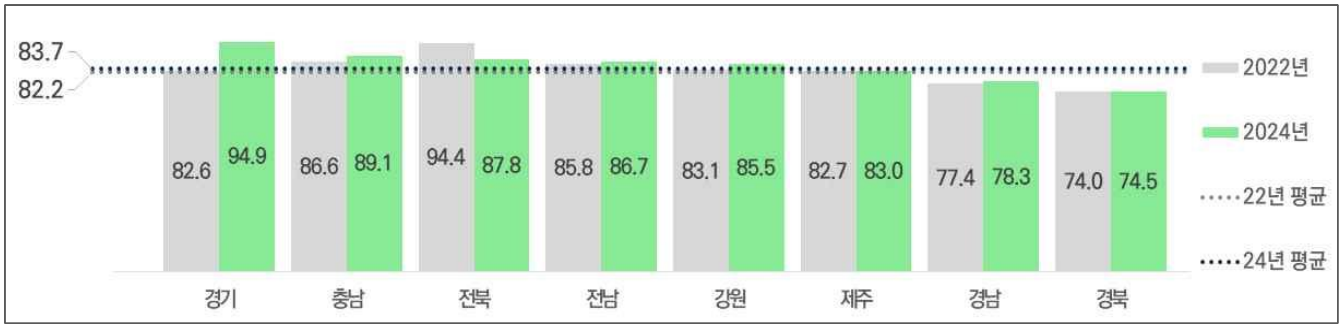
<공항여객터미널별 기준적합 설치율(%)>



* 무안공항은 '12·29여객기 참사'로 금번 조사에서 제외됨

○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고,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음

<여객선터미널별 기준적합 설치율(%)>



○ (**궤도 및 삭도 정류장**)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음

<궤도 및 삭도 정류장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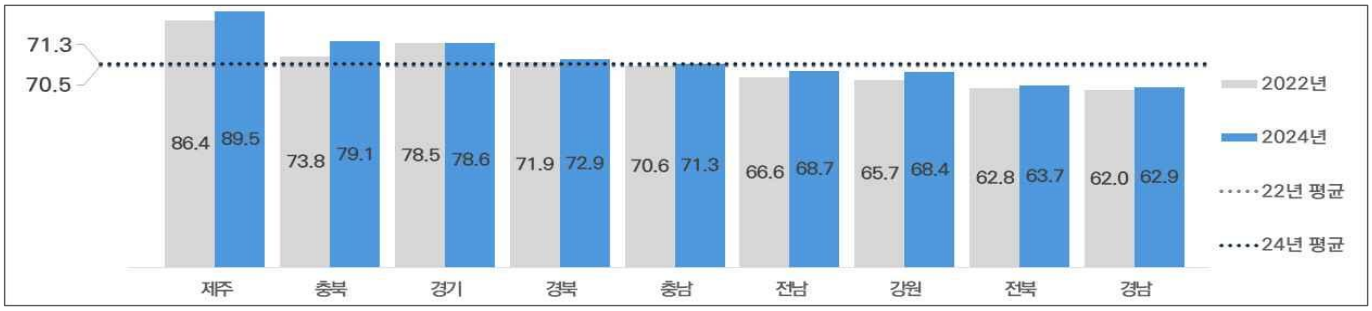
* 제주는 궤·삭도 시설 미존재

3. 도로(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2년 대비 0.8%p 증가

□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보도,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8개 항목

<지역별 도로(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4 교통약자 이동실태 : 교통약자별 이용 교통수단 상이

□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43.2%)를 이용하거나, **보행**(19.9%,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고,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31.8%), **버스**(27.9%)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27.8%)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시·군 내 11.0%, 시·군 외 12.3%, 광역 5.7%) 및 **특별교통수단**(시·군 내 8.2%, 시·군 외 10.1%, 광역 5.2%)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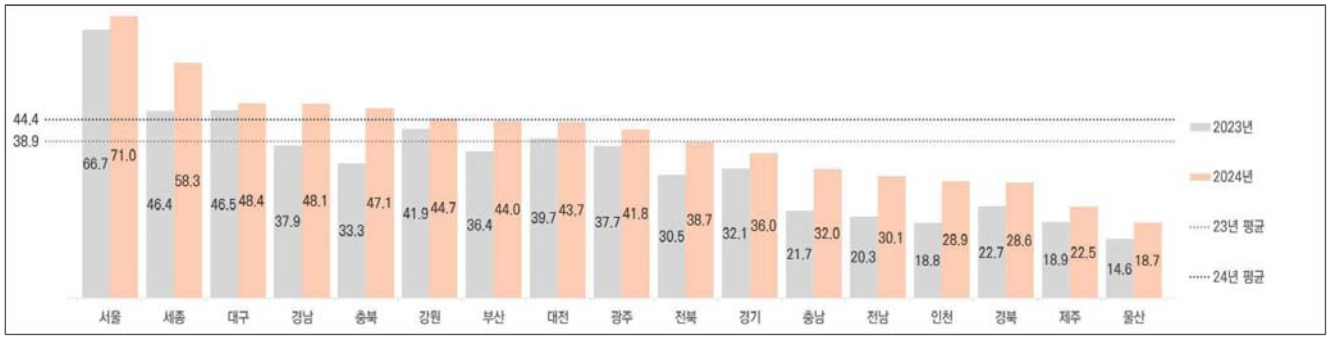
5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 보급률 상승 지속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5.5%p) 늘어났고,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확보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 이상 확보)

○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음

<지역별 저상버스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으며,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4.8%)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전북자치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교통약자 운송수단, 편의시설 확충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 187억원(국비 28, 기금 56, 도비 14, 시군비 89)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임차택시, 운전원 인센티브
- 교통약자 운송수단 확충 : 179억원(국비 80, 도비 44, 시군비 55)
  특별교통수단 도입(63대), 저상버스 도입(142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392대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 21개소, 3억원(도비 1, 시군비 2)

○ 전북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24년 1~5월) 25만명→ ('25년 1~5월) 27만명으로 2만명이 증가하였음

○ 전북자치도의 **저상버스 도입**은 **'25년 9월말 기준 421대**로 **운행버스 1,065대 대비 3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안군을 제외하고 **군단위에서의 도입률은 미미**한 수준임

<전북자치도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 대, '25.9월)

시군	구분	운행버스			목표 대수	'25년 도입현황 (9월말)	'25년 도입계획					'25년 말 도입예정
		운행 버스	예외 승인 버스*	기준 버스			도입(a)			대폐차 (b)	순증 (a-b)	
							계	당해	이월			
계		1,065	135	930	385	421	164	142	22	36	128	495
전주시	시내	424	0	424	173	218	73	73	0	29	44	263
	마을	29	0	29	14	0	0	0	0	0	0	0
군산시	시내	119	0	119	49	97	25	20	5	4	21	97
익산시	시내	168	0	168	69	67	23	17	6	3	20	75
정읍시	시내	53	6	47	19	6	15	8	7	0	15	18
남원시	시내	44	0	44	18	4	4	3	1	0	4	4
김제시	시내	43	14	29	12	6	3	3	0	0	3	6
완주군	마을	35	0	35	17	7	3	3	0	0	3	4
진안군	농어촌	23	23	0	0	0	2	0	2	0	2	2
무주군	농어촌	11	11	0	0	1	1	0	1	0	1	1
장수군	농어촌	9	9	0	0	0	0	0	0	0	0	0
임실군	농어촌	23	23	0	0	0	3	3	0	0	3	3
순창군	농어촌	15	0	15	6	0	3	3	0	0	3	3
고창군	농어촌	33	33	0	0	0	4	4	0	0	4	4
부안군	농어촌	36	16	20	8	15	5	5	0	0	5	15

* (저상버스예외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저상버스 미도입 가능(기준대수 미포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률은 100%**('25년 9월말)로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이용율 및 대기시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전라일보, '24.10.30. 기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북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단위 : 명, 대, '25.9월)

시·군	법정대수			도입대수 ('25년9월말)	'25년 도입계획					비고 (임차 택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	도입 기준	법정 대수		도입 (a)	대폐차 (b)	순증 (a-b)	차량수	도입율 (%)	
계	33,928		273	273	63	33	29	286	105%	63
전주시	8,927	1대/150명 (10만초과)	60	67	13	10	2	69	115%	30
군산시	4,527		31	33	3	3	0	33	106%	12
익산시	5,829		39	41	10	10	0	41	105%	6
정읍시	2,611		18	18	4	4	0	18	100%	4
남원시	1,854	1대/100명 (10만이하)	19	19	4	4	0	19	100%	0
김제시	2,326		24	21	7	0	7	24	100%	8
완주군	2,092		21	15	7	0	7	21	100%	0
진안군	619		7	7	3	0	3	7	100%	0
무주군	548		6	6	0	0	0	6	100%	3
장수군	496		5	5	2	1	1	5	100%	0
임실군	752		8	7	1	0	1	8	100%	0
순창군	680		7	6	2	1	1	7	100%	0
고창군	1,361		14	14	5	0	5	14	100%	0
부안군	1,306		14	14	2	0	2	14	100%	0

6.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관계부처합동, '25.11.26.)

Ⅰ. 추진배경

□ **자율주행차**는 **피지컬 AI의 대표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시장규모('25.2, Metatech Insights): ('24) 1,865억$ → ('35^{e}) 6조 8,158억$

○ **자율주행차 기술**은 **실증**을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며 발전하는 형태로 **주행 데이터**와 **고성능 서버**가 기술 경쟁력을 좌우

* 실증을 통한 주행데이터 축적 → 자율주행 AI 학습(고성능 서버: GPU) → 실증 단계 반복, 학습 시 예외·복잡 상황(Edge case) 데이터가 중요

□ 현재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 대비 우리나라 **자율주행 경쟁력**은 **열세**

* 자율주행 상위 20대 기업('25, GuideHouse): 美 14개, 中 4개, 英 1개, **韓 1개**

○ **미국·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중이나,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개발중

* (美) 구글 Waymo, 누적 주행거리 **1억 6,000만km**, 운행대수 **2,500대**
(中) Baidu, 누적 주행거리 **1억km**, 운행대수 **1,000대**
(韓) 전체 기업, 누적 주행거리 **1,306만km**, 운행대수 **132대** * **택시형 3대, 40.2만km**

□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로서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

⇒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❶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❷규제 개선**, **❸R&D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❹제도 정비** 추진

※ 현재 美·中은 Lv.4 수준으로 대규모 실증 중, 우리나라는 Lv.3 수준으로 평가

<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 > *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구분	Lv.0	Lv.1	Lv.2	Lv.3	Lv.4	Lv.5
명 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을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 X,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작동구간 내 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예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	전 구간
예 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	조향 및 감가속 동시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Ⅱ. 추진전략

비전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목표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전략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추진 방향	실증규모 확대	규제 합리화	R&D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추진 과제	① 실증도시 조성	① 영상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확대	① GPU 확보·지원	① 형사·행정제재 대상 명확화
		②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② E2E 기술 개발	② 민사상 책임소재 기준 정립
	② 교통취약지역 내 서비스 확대		③ 핵심부품 개발	③ 제조물책임 제도 개선
		③ 실증운행시 애로 해소	④ 해외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④ 사회적 협의체 구성
기대 효과	데이터 축적+ 국민 체감도 제고	R&D·실증 활성화	차량 생산·기술 기반 확충	사회적 연착륙 기반 마련

Ⅲ. 추진과제

1 실증규모 확대

◇ **100여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여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

1 실증도시 조성

□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특례***를 제공 중이나,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 범위 **협소**

*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안전기준 특례 등

○ 이는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 중인 美·中* **대비 격차**의 주원인

* (美)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 / (中) 우한, 선전 등

□ **(추진방안)**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26) 추진 국토부

○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실증 진행

○ **대기업·스타트업**이 모두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 구축

* (예) 대기업OEM사(차량) + 대기업플랫폼사(관제) + 스타트업자율주행 SW 등

2 교통취약지역 내 서비스 확대

□ **(현황)** **유상 여객운송** 등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 보조*** 중

* 국비-지방비 5:5 매칭 → 47개 시범운행지구 中 11곳에 지원

○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외에도 **지역의 부족한 버스기사·노선** 문제가 해소되는 등 **교통취약지역**의 서비스 **체감도**가 특히 **우수**

* (사례)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재이용 의사 90% 이상

□ **(추진방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內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 확대** (26~) 국토부

2 규제 합리화

◇ R&D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관련 제도 운영 유연화

1 영상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확대

□ [양질의 데이터 확보] 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 **(현황)** 기업이 **R&D 목적**으로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 후 **가명처리** 필요

* '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활용률 제고를 위해 안전조치 중 분리공간 의무 완화 추진 중

- 이는 R&D 목적으로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 중인 **미국·중국 대비 기술격차***의 원인으로 작용

* 자율주행 기술수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기술수준평가): (美) 100 (中) 89 (韓) 80

○ **(추진방안)**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 허용('26)

* 원본영상 활용시 가명처리영상 대비 인식 정확도 최대 25% 향상(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Training?, '23)

▶ **(필요조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위] **또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국토부]

□ [다량의 데이터 확보] 개인차량을 통한 영상데이터의 수집 · 활용 추진

○ **(현황)**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다량의 데이터** 수집·학습이 핵심 → 실증R&D용 **자율주행차**(現 132대)를 통한 수집만으로는 **부족**

- **현행법상** 기업이 **R&D 목적** 하에서 **양산된 개인차량**을 통해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분명**

※ 美 테슬라의 경우 자사 양산차량에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차주의 동의 하에 익명처리하여 자율주행 R&D에 활용 중

○ **(추진방안)** **차주 동의** 하에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 추진**

2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 운수사업자 대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허용

○ **(현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개발사**만 취득 가능

- **버스·택시** 등 자율주행차 실증시 **운수사업자 단독 운행이 불가**하여 **운영상 비효율*** 발생

* (예) 버스기사 외 자율주행기술 개발사 직원 동석 의무 → 다수 개발사는 소규모 인력의 스타트업으로 인력 운용에 애로

○ **(추진방안)** 운수사업자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허용**('25.12~)

* (예) 버스기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이수 후 개발사 직원 없이 직접 운행

▶ **(필요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관련 유권해석[국토부]

□ 임시운행허가 Fast-track 대상 자율주행차 유형 확대

○ **(현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시 **핸들·페달**이 있는 유형(A형)*에 한해 성능·안전성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신속허가**** 제공

* (A형) 핸들·페달 有 / (B형) 핸들·페달 無, 탑승 가능(예: 운전석 없는 셔틀)
(C형) 핸들·페달 無, 탑승 불가(예: 무인 화물 운송차)
** (주요 요건) ❶임시운행허가 실적 20대 이상 + 신규허가(재허가 X) 실적 10대 이상
❷차급(배기량 기준), 자율주행 기능 등이 동일한 자율주행차 旣허가

-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B·C형의 실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속허가가 불가**하여 실증 확대에 애로

* B·C형 실증 차량: ('22) 1대 → ('25) 10대

○ **(추진방안)** 신속허가 대상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26.1Q)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국토부]

□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요건상 안전성 확보방안 기준 마련

○ **(현황)** **무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요건상 기능과 운행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나, **구체적 기준 부재**

○ **(추진방안)** 안전성 확보방안 **세부기준** 마련('26.上)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국토부]

3 실증운행시 애로 해소

□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 **(현황)**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내 **수동주행**만 가능하여 **자율주행 실증데이터 축적·학습 불가**

○ **(추진방안)**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요건 완화**

-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안전계획*** 수립시 허용('26.1~)

* 속도(예: 30km/h 이하 운행)·시간(예: 출·퇴근 및 등·하교시간 제외 운행)·기술조치(예: 전방충돌 방지기능 구비) 등이 포함된 자체 안전조치 계획서

▶ **(필요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국토부]

□ 안전기준 특례 부여 지역을 시범운행지구 外 구역까지 확대

○ **(현황)** 현행법상 **안전기준 특례***가 필요한 자율주행차(B·C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 가능

* 자동차 안전기준상 필요한 조향·제동장치 등이 없으면(B·C형) 운행이 불가하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안전기준(조향장치·좌석 등) 및 유상 여객·화물운송 관련 특례가 부여되는 구역

○ **(추진방안)** B·C형 자율주행차의 **자유로운 실증·운행**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안전기준 특례 부여**('26)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국토부]

□ 지방정부까지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

○ **(현황)**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하여 **기업수요**에 대응한 **신속·유연한 운영**에 한계

* 시·도지사 신청 → 실무위원회 심의 → 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심의(신청일부터 90일+45일 이내) → 국토부장관 지정

○ **(추진방안)** 시범운행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26)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국토부

□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범위 확대(주차 → 주행)

○ **(현황)**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중 **비상상황**(예: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원격제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원격제어는 **주차***만 가능

* 이격거리 6m, 이동속도 10km/h 이내

-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제어 실증**을 진행 중*이나, **한시적 특례**(2+2년)라는 한계 존재

* '25.4월 기아자동차에 원격제어 관련 현행 이격거리·속도 기준 등을 넘어서는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25.10월 실증 개시

○ **(추진방안)** **원격주행**을 위한 **원격제어 특례 규정**을 **마련**('26.上)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령개정 추진**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국토부

3 R&D 지원

◇ **자율주행차 기술·생산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지원 확대**

□ **(GPU)**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지원('26~)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29)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R&D** 지원[국토·산업·과기정통부]

*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GPU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AI 학습·개발을 할 수 있는 컴퓨팅센터

□ **(E2E)**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E2E**(End-to-End)* 기술 개발 지원

*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는 기존의 Rule-based 방식과 구별되며, 美 테슬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방식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접목이 시작되는 단계

○ **다양한 주행환경 대응**과 **성능·안정성** 확보를 위한 **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❶**실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❷**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검증 등을 통해 **상용화** 목적의 **E2E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산업부]

□ **(핵심부품)**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부품** 개발로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

○ 다양한 차종에 적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확보**를 위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SW로 제어**할 수 있는 **SDV*** **개발** 지원[산업부]

* Software Defined Vehicle : 차량 전주기 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

○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처리 등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및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 지원[산업부]

□ **(해외협업)** 자율주행 기술의 **해외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26.1Q~)[산업부]

* 국내기업에 연구결과의 권리가 귀속되는 연구로 한정
**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절차: 신청 → 전문위원회 검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산업부 장관 승인

□ **(인력)** **기술개발인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희망하는 대학(원) 대상 **학생정원 증원·배정**(~'26.1Q)[교육부]

* 미래자동차 분야 입학 정원 : [학부] ('25) 684명 → ('26) 791명
[대학원] ('25) 48명 → ('26) 증원 예정(심사 中)

4 제도 · 인프라 정비

◇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존 제도를 선제 정비하고, 사회적 연착륙 방안 검토**

□ Lv.4 자율주행차 관련 형사 · 행정제재 대상 명확화

○ **(현황) 교통사고·법규위반**(예: 뺑소니, 신호위반)시 **형사·행정제재** 대상은 **운전자**이나, 운전자가 없는 **Lv.4 이상** 자율주행차는 **제재대상 불명확**

○ **(추진방안)**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주체***(예: 안전관리자) 개념 도입('26)

* (예) 주행 전 자율주행 시스템 이상여부 및 운행환경 확인, SW 업데이트, 비상대응절차 수행,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등

- 해당 주체와 함께 운행사업자·제조사 등 **주체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법사항**에 따른 **형사·행정제재 대상 명확화**

▶ **(필요조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경찰청

□ 자율주행차 사고시 민사상 책임소재 기준 정립

○ **(현황)** 현행법상 차량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가 **자율주행차** 사고시에도 **유효한지 불명확**

* 운행자·운전자·제조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부여
↳ 운행여부와 목적지·경로를 정하고 운행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으로, 보통 차주와 동일

○ **(추진방안)**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고책임 TF*** 구성·운영('26~)

* 국토부·교통안전공단·보험업계 등 관계기관 합동

- TF 논의 등을 토대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 배포**('27)

▶ **(필요조치사항) 사고책임 TF 구성·운영**국토부

□ 제조사 책임부담 현실화를 위해 제조물책임 제도 개선

○ **(현황)** 운전자가 없는 **Lv.4 이상**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제조사에게 구상 필요**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 다수

* ❶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
❷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을 것
❸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 **(추진방안)** **결함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제조사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으로 **입증부담 경감**('26)

* 상기 3개 요건 중 ❷번 삭제

- 제조사의 **비밀유지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

▶ **(필요조치사항)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무부·공정위

□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 **(현황)**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대규모 실증·상용화**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여 **상생모델 도입 촉구**

○ **(추진방안)** 정부·자율주행업계·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연착륙 방안** 논의('25.12~)

▶ **(필요조치사항) 정부·자율주행·택시업계 논의기구 구성·운영** 국토부

Ⅳ. 향후일정

추진 과제	담당부처	추진일정
1 실증규모 확대		
• 실증도시 조성	국토부	'26
• 교통취약지역 내 서비스 확대	국토부	'26~
2 규제 합리화		
• 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국토부· 개인정보위	'26
•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가능성 명확화	개인정보위	즉시
• 운수사업자 대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허용	국토부	'25.12월~
• 임시운행허가 Fast-track 대상 자율주행차 유형 확대	국토부	'26.1분기
•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요건상 안전성 확보방안 기준 마련	국토부	'26.上
• 안전조치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국토부	'26.1월~
• 안전기준 특례 부여범위를 시범운행지구 外 구역까지 확대	국토부	'26
• 지방정부까지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	국토부	'26
•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범위 확대	국토부	'26.上
3 R&D 지원		
•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 및 AI 학습센터 조성	국토·산업· 과기정통부	'26~
• E2E 기반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기부	'26.上~
• 상용화 목적의 E2E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산업부	'25~
• 고속도로 무인 자율주행 화물운송 E2E 기술 개발	산업부	'25~
• SDV 통합 플랫폼 확보	산업부	'25~
•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개발	산업부	'25~
• 차량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	산업부	'25~
• 국가핵심기술 국외반출 심사 간소화	산업부	'26.1분기~
• 첨단분야 인재양성 희망 대학(원) 대상 학생정원 증원	교육부	~'26.1분기
4 제도 정비		
• Lv.4 자율주행차 관련 형사·행정제재 대상 정립	경찰청	'26
•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구성·운영	국토부	'26~
•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분담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27
• 제조물책임 제도 개선	법무부·공정위	'26
• 정부·자율주행·택시업계 논의기구 구성·운영	국토부	'25.12월~

※ **후속대책**으로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관련 관제·차량관리·중개 등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 마련(~'26.上)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전환산업과,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25년 7월 기준)은 총 42개 지구가 지정되었음*

* 변경: 3곳, 지정 해제: 1곳(강원 원주)

○ **전북자치도는 군산, 익산, 광역 3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되어 있음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는 **자율주행차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지원 조례」**('25.5.23. 제정)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북(광역): C(다소우수), 군산: D(보통), 익산: E(미흡) 평가**를 받고 있음

<시범운행지구별 평가결과>(2022~2024)

연번	지구명	평가결과			연번	지구명	평가결과		
		2024	2023	2022			2024	2023	2022
1	제주	A	B	B	19	충남(내포)	D	D	E
2	서울(중앙차로)	A	C		20	경북(도청)	D	E	
3	서울(청와대)	A	B		21	세종	D	C	E
4	서울(상암)	A	A	A	22	경북(경주)	D		
5	충청권	A	A		23	울산	D		
6	경기(안양)	A			24	대구(동성로)	D		
7	충북(혁신)	B	C		25	경남(하동)	E	E	

8	서울(강남)	B	D	E	26	광주	E	D	B
9	서울(청계천)	B	C	B	**27**	**전북(익산)**	**E**	**E**	
10	제주(첨단)	B	E		28	경기(시흥)	E	E	E
11	대구	B	B	C	29	전남(해남)	E		
12	경기(판교)	B	B	B	30	충남(당진)	E		
13	강원(강릉)	B	D	D	31	부산	E	E	
14	인천(공항)	C			32	경남(사천)	E		
15	전남(순천)	C	E	E	33	인천(구월)	E		
16	서울(여의도)	C	B		34	인천(송도)	E		
17	**전북(광역)**	**C**			35	인천(영종)	E		
18	**전북(군산)**	**D**	**E**	**E**	36	강원(원주)	E	E	E

* '24년 평가결과('25.12.1) 기준: 36개 지구로 작성, '23년: 24개 지구, '22년: 14개 지구
※ 출처 : 국토교통부

○ 전북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역 평가점수가 낮은 것은 3개의 지구 모두 **"운영실적목표 달성 미흡. 계획대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필요"**하다는 이유임

○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절차가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익산의 경우 '23년, '24년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E등급으로 국토교통부는 3년 연속 E등급인 지역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타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바, 전북자치도에서도 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통하여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자치단체별 자율주행자 운행 현황>

자치단체	자율주행차 운행 현황	비고
서울시	- 지난 9월부터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버스*를 청계천 일대에 투입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국내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 *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관리자가 조이스틱을 통해 수동으로 제어 가능	
경기도	- 2023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시내버스인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지난 9월부터 2판교까지 확대 운행하고, 2028년까지 AI 기반 LV.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	
안양시	- 지난해 4월에 기초 지자체 최초로 LV.3의 자율주행 버스(18인승)가 운영 시작, 내년부터 LV.4 자율주행차(11인승) 운행 예정	
제주도	- 지난 9월부터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운전석 없이 안전 관리자만 탑승하고, 핸들과 페달 없이 이동해 자율주행 LV.4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영 ※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새벽에 도로를 청소하는 자율주행 청소차가 시범 운행	
충청남도	- 전국 최초로 주 정차 단속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며,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모습 ※ 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 보문단지에서 LV.4 자율주행차가 각국 정상들을 태워 호평	

7.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인공지능 분야) 발표(관계부처합동)

◇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
◇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업 애로 해소
◇ 인공지능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 참여하여 전방위적 과제 조사
◇ 인공지능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67개 과제)

1 추진배경

○ **(신산업 규제합리화 방향)** AI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 적용 배제 ▲글로벌 최소 수준 규제설계 ▲네거티브 전환 확대 등 신산업 성장 촉진자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 **(AI 분야 선정)** 신산업 분야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융복합 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중

- 특히, AI를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할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산업·기술 육성 경쟁 치열*

* 글로벌 AI 시장규모('25예측) 2,545억 달러→('31) 1조 6,800억 달러로 성장 전망(Statista, '25)
- 주요 투자규모 : 美(스타게이트 프로젝트) 630조원, 中(인공지능 사업사슬 발전지원) 193조원

⇨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동시에, 기업의 구체적인 현장 애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재설계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조실 주관 범정부 협의 추진

2 추진경과

○ 전문가 집단, 기업 등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확정

* 연구용역(행정연, 4月 ~), 간담회(5회), 부처조정회의(수시) 등

○ 이견이 첨예한 핵심과제들은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전문가 · 기업 및 소관 부처 토론을 통해 이견 조율 (9.15.)

○ 연구기관 (행정연 · STEPI · 법제연 · KDI 등), 전문가 (학회 · 교수), AI관련 기업과 네거티브 방식을 고려한 전방위적 과제 조사 (25개 부처, 67개 과제)

○ 법 · 제도 중심보다는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 해결

※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토론회 (9.15.), 국무총리 반도체공장 현장 방문 (9.110)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 모색

3 로드맵 추진방향

○ AI 분야는 범용기술로서 산업 가치사슬이 복잡 · 다단 → 관련 규제의 심도깊은 파악을 위해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이슈 발굴

* ①기술개발 규제개선, ②AI활용분야 제약해소, ③AI 인프라 장애물 제거, ④신뢰 • 안전 규범 마련

○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단계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서비스에 활용될 때의 규제이슈 및 AI산업의 근간인 인프라분야 등이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효과적인 시장육성 가능

《 AI 산업 밸류체인별 주요 규제이슈 》



3 인공지능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내용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제공**

-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완화

(현황) 저작물 '공정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인공지능 학습에 장애

(개선)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25.12)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현황) 개방 공공데이터 중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으며,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 · 가공 필요

(개선) 인공지능 개발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 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 · 개방 ('25.12~)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쉽게 활용가능한 '인공지능-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26~)

○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정비**

-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상용화 도모

(현황) 시범운행지구 면적이 선진국 대비 면적이 제한적이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개선)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 ('26.1분기)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인공지능 로봇 활용 가속화

(현황) 기존의 전통기술·사람중심의 규제체계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 ('27.上 로드맵 수립)

* (주차로봇) 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 (~'26)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 심사기간 단축 (60→30일)('25.11)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설 · 운영 부담 경감

- 미술작품 · 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현황)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전산장비 위주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비용 증가

(개선) 미술작품 설치 장소 및 설치금액 (산정요율) 조정 ('26.上)

승강기 설치의무 산정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토록 개정안 마련 ('26.上)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 생명 · 신체 ·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현황)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범위가 불분명하여 부담 가중

(개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 및 고영향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 ('26.1)

참고 **인공지능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과제 [부처합동]**

1. 기술개발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

▶ AI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문체부)

현황 現 저작권법상 저작물 **'공정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나,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통한 판결 전까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장애 요인

개선 **공정이용 판단기준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25.12)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선 검토('26. 上)

⇒ (**효과**)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 모델 개발

▶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대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제공 (문체부, 과기정통부, 노동부)

현황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제한**이 있어 AI 학습 활용에 제한
- 특히, 국가자격증 시험문제는 인터넷(Q-net)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활용에 제한

개선 ① (문체부)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여 AI 기업의 저작물 활용 여부 명확화('25. 12) 및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제도 신설('26)

②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추진(~26)

③ (노동부, 문체부) **전문자격시험 데이터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 확대(~26)

⇒ (**효과**) 저작권 분쟁 없는 공공저작물 데이터 개방 확대로 AI 학습 생태계 개선

▶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지식재산처)

현황 현행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AI 기반 창작물의 권리 및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보호 문제 발생

개선 ① (특허권) **AI 기여사항 판단기준**, **법적 지위 심사기준**(안) 마련('26.上)

② (디자인권) 창작적 기여 판단에 따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안 마련('26.上)

⇒ (**효과**) 명확한 심사지침 제공으로 규제 공백 해소 및 출원·심사 품질 제고

<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 AI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현황 ① 산업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부재**

② 제조공정·장비 간 **제조데이터 표현 방식이 상이**하여 데이터 연결 시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비용 소모

개선 ① (산업부, 과기정통부) 학습데이터 **생성 툴 제공** 및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 구축('26~)

② (중기부)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 개발·제공('27)

⇒ (**효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한 AI 전환 촉진

▶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 (개인정보위, 금융위)

현황 ① 가명정보 처리·결합 시 일률적인 절차로 **가명정보 제공 활성화 저해**

② 결합된 가명정보는 **한번 사용 후 파기**해야 하는 등 **활용성 저조**

개선 ①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결합 반복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26.上)

② 안전성 요건 충족시 **재사용 허용, 보관기간 유연화**(~'26.上)

⇒ (**효과**) 가명정보 처리·결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

▶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행안부)

현황 ①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음**

②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 필요**

개선 ① 기업 수요를 반영,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25.12~)

② AI 학습·분석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맷·메타데이터·품질기준 등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25) 및 **관리체계** 마련('26~)

⇒ (**효과**)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 통해 AI 개발 촉진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구체화 (행안부)

현황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

개선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 개방 유도**

⇒ (**효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일선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2. 서비스 활용

< 모빌리티 · 지능형로봇 >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방안 마련 (국토부)

현황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노선 위주로 자율주행 선진국 대비 면적이 협소,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개선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26.1분기)

⇒ (**효과**) 시범운행지구 신청 및 운영 활성화로 자율주행 여객 운송 등 **기술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 (산업부, 국토부)

현황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27.上 로드맵 수립)

* (주차로봇) 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26)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 심사기간 단축**(60→30일)('25.11 시행)

< 공공행정 >

▶ 대국민서비스 AI 활용을 통한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 (국세청, 중기부)

현황 현행 민원대응 서비스는 단순·반복적 문의에는 효과적이나, 개별 상황 등을 반영한 심층적 안내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에 불편

개선 ① (국세청) 생성형 AI를 활용,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개발('26~)
② (중기부) 소상공인 상담, 지원 정책 등 제안하는 AI 도우미 구축('26~)

▶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조달청)

현황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AI 제품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인센티브 부재**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움

개선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심사 시 **AI 기술 분야를 신설,** 기술심사 항목 **배점 상향** 및 **기술품질 최대 가점 전격 확대**('26.下)

⇒ (**효과**) AI 적용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우대를 통한 공공조달 분야 사용 활성화 촉진으로 AI 산업 활성화 도모

3. 인프라

▶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 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 (문체부, 국토부)

현황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 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 가중

개선 ① (문체부)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성 고려,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 조정**('26.上)

② (국토부) **승강기 설치**의무 거실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 제외**토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26.上)

※ 반도체공장 건설규제 완화 방안 마련 ('25.9.11 국무총리 반도체공장 행보시 발표)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및 방화구획 설정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법령 정비

4. 신뢰 · 안전 규범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과기정통부)

현황 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및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부담** 가중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

개선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26.1)

⇒ (**효과**) AI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규제 합리화**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과기정통부, 노동부)

현황 고영향 AI인 채용 AI의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 혼란 및 구직자 불안** 존재

개선 AI 채용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 활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용자(구인기업)가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26.1)

⇒ (**효과**) AI 채용시스템 도입의 활용 기준 제시, 구직자 권익침해 예방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아동 · 청소년 삶의질 연구 동향 및 전북자치도 정책 과제
[국가통계연구원, '25.10.]

<< 연구요약 >>

◇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만 0~18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8개 영역 62개 지표로 측정함. 신체 건강이나 물질적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정신 건강(스트레스, 불안,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임. 학습 시간은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했으며, **디지털 과의존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편의시설 접근성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서 격차가 뚜렷하며, 이는 전북자치도의 시·군간 활동 격차 해소라는 지역적 과제와 직결됨. 정책 제언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정신 건강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성장지원 모델 강화가 필요함

1. 배경 및 목적

○ 아동·청소년기(만 0~18세)는 생애주기 중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으며, 이 시기의 삶의 질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개선 가능성과 효과가 크다**는 함의를 가짐. 또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증거 기반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이 필수적임

○ 본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에서 2025년 10월 1일에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을 목적으로 함. 동 보고서는 **8개 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줌

2. 주요 현황

가. 인구 및 사회적 배경 변화

- 아동·청소년(0~18세) 인구는 2025년 기준 7,08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이며, 2000년 27.5%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6.3%에 이름. 아동 거주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24년 5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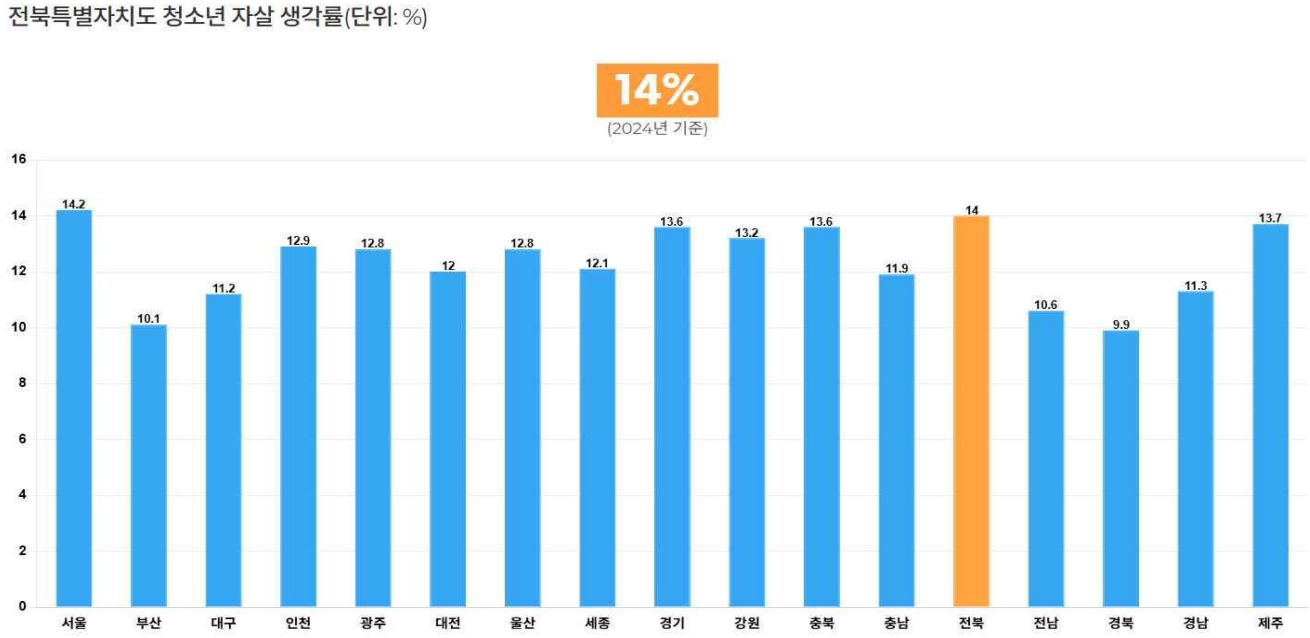
나. 정신 건강 악화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 신체 건강 지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나, 정신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스트레스 및 불안**: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42.3%로 전년 대비 5.0%p 증가했으며,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2024년 14.1%로 증가 추세임
- **자살 위험**: 자살률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2~18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순위를 차지함
- **지역별 편의성 격차**: 거주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접근성(도보 10분 이내)은 농어촌 지역이 61.3%로, 대도시 78.6%에 비해 17.3%p 낮아 지역별 차이가 뚜렷함

다. 전북 지역 청소년 위기 현황

- 전북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위기 수준을 보임.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내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현황(2024년 기준)을 보면, **도내 학생의 14.0%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14.2%) 다음으로 높으며, **전국 평균(12.3%)보다 1.7%p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출처: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정신건강통계 현황 ('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3. 주요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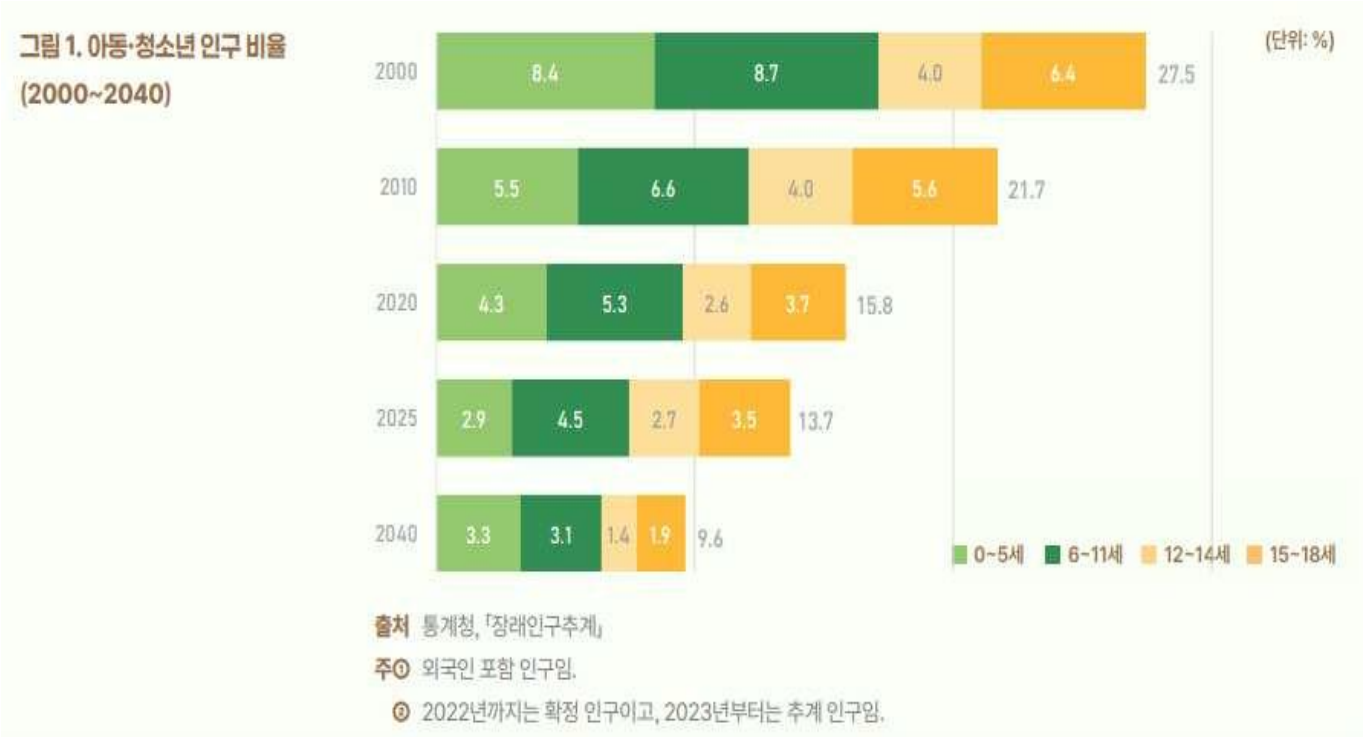
: 본 요약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발간('25.10.)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의 8개 영역 62개 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가. 사회적 배경 및 인구 변화

- **아동·청소년(0~18세)** 인구는 **2025년** 기준 7,082천 명으로 **전체 인구 13.7%**를 차지하며, 2000년 27.5%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함. 아동 거주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24년 5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반적인 교육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10여 년간 **15%~18%** 정도에 그치며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

[그림 1] **연도별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 (2000-2040)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25>

나.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 물질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임. 물질적 결핍지수(14개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 응답비율)는 2018년 31.5%에서 2023년 17.6%로 개선으로 나타남

  • **소득 격차**: 그러나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49.5%로, 일반 가구(16.5%)보다 **2배 이상 높은 격차**를 보임. 또한, 저소득 가구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항상 또는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일반 가구(6.3%)와 큰 차이를 보임

  • **거주 지역 편의성**: 거주 지역 내 편의시설 접근성(도보 10분 이내)은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에서 80% 이상으로 높으나, 문화체육시설(74.7%)과 사회복지시설(68.1%)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 **농어촌 지역은 자연환경을 제외한 모든 편의시설 접근성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10%p 이상의 차이**를 보임

다. 건강

- 객관적 건강지표는 안정적이거나 개선 추세이나, 정신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스트레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34.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4년 42.3%로, 2023년(37.3%) 대비 5.0%p 증가.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49.9%)은 남학생(35.2%)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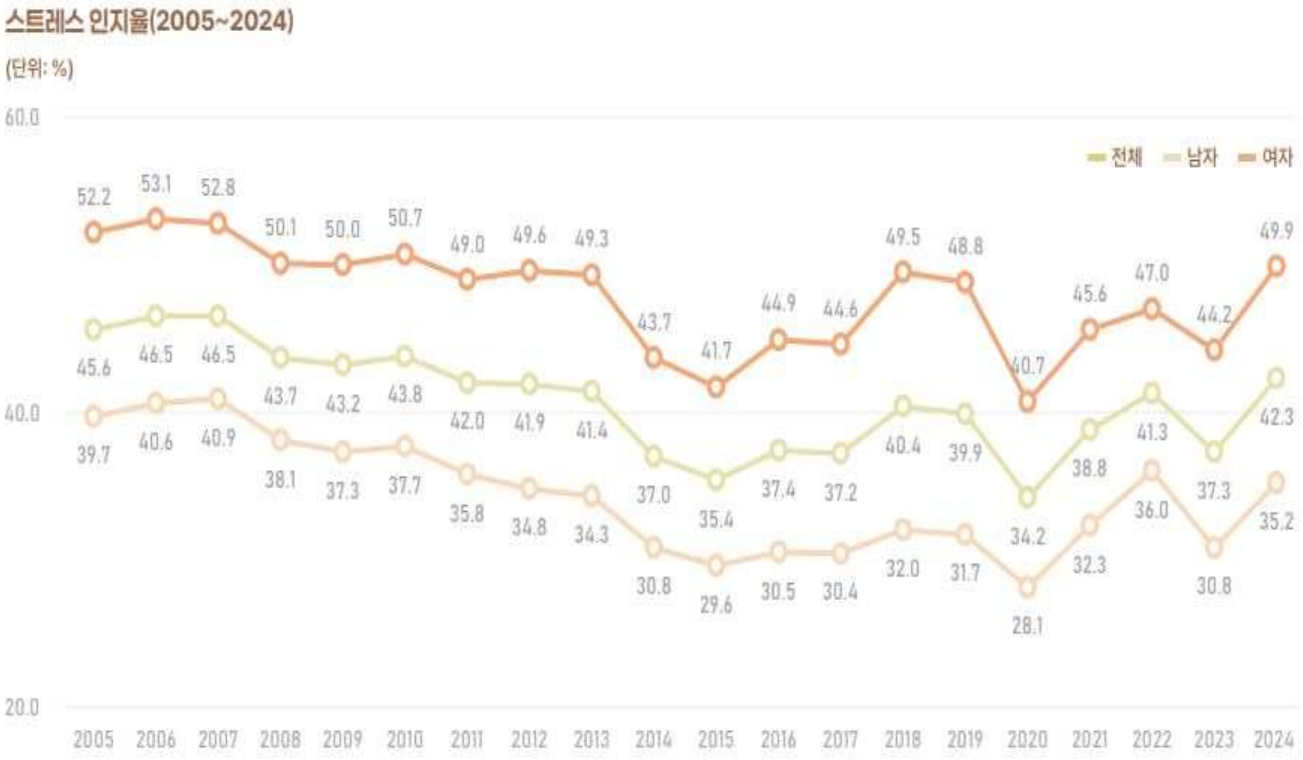
  • **범불안장애**: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2024년 14.1%로 증가했으며, **여학생(18.0%)**이 남학생(10.3%)보다 **7.7%p 더 높음.**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2020년 11.2%에서 2024년 14.1%로 지속 증가 추세임. 성별로는 여자가 18.0%, 남자가 10.3%로, 여자의 경험률이 7.7%p 높게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6~7%p 이상의 격차를 보임

  • **자살 위험:** 자살은 12~18세 사망 원인 중 1순위를 차지하며, 자살률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3년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나타남. 특히 12~14세의 자살률이 2021년~2023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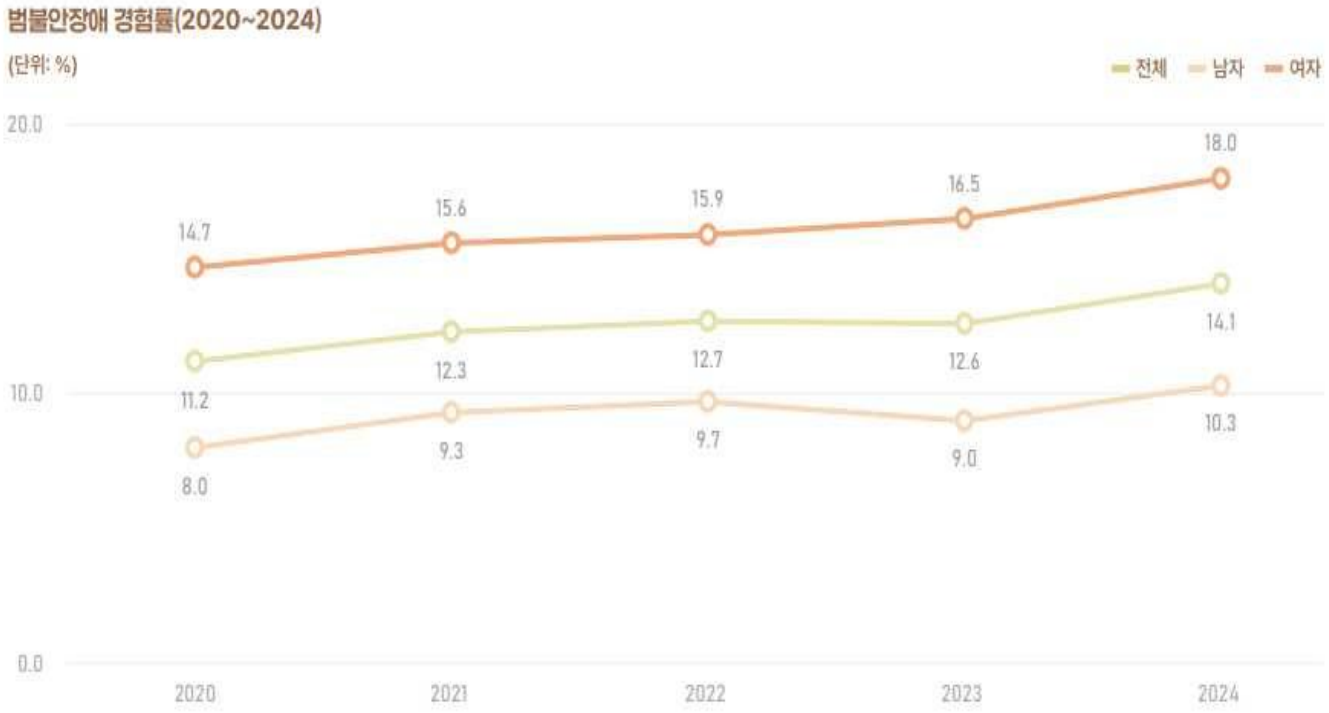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내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도내 학생의 14.0%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12.3%보다 높은 수치**임

- **영양 결핍**: 아동·청소년기의 영양결핍률은 2001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 전후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함.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후, 2023년에 소폭 다시 증가함. 연령별로 볼 때 10세 미만(1~9세)에 비해 10세 이상(10~18세)의 영양결핍률이 현저히 높음. 2023년 기준, 1~9세는 4.8%인 반면, 10~18세는 22.8%로 5배 가까운 격차를 나타냄

[그림 2] **스트레스 인지율 및 범불안장애 경험률 성별 비교** (2024년)



·지표정의: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지표정의:	일상생활에서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범불안장애 선별도구(7개 항목) 총점 21점 중 10점(중등도 불안) 이상인 사람의 비율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41,44>

라. 학습 · 역량

-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학교 학습시간 감소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으나, 공교육 외 학습 부담은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2014년 2시간 16분 대비 2024년 3시간 13분으로 **1시간 가량 증가**했음

- 학교급별 학습시간 중 학교 외 학습시간 변화에 대한 시각화 자료가 필요함. 사교육 참여율은 2024년 80.0%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이며,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음

-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23년 3.32점으로 상승 추세이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23년 **2.84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지역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인됨. **농어촌 거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76점**으로 대도시 2.87점보다 낮으며,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역시 **농어촌 거주 학생은 3.22점**으로 대도시 3.37점보다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남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600만 원 이상 3.46점)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고, 200만 원 미만(2.95점)과는 차이를 보임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56> 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실태조사」참고

마. 여가 · 활동 ·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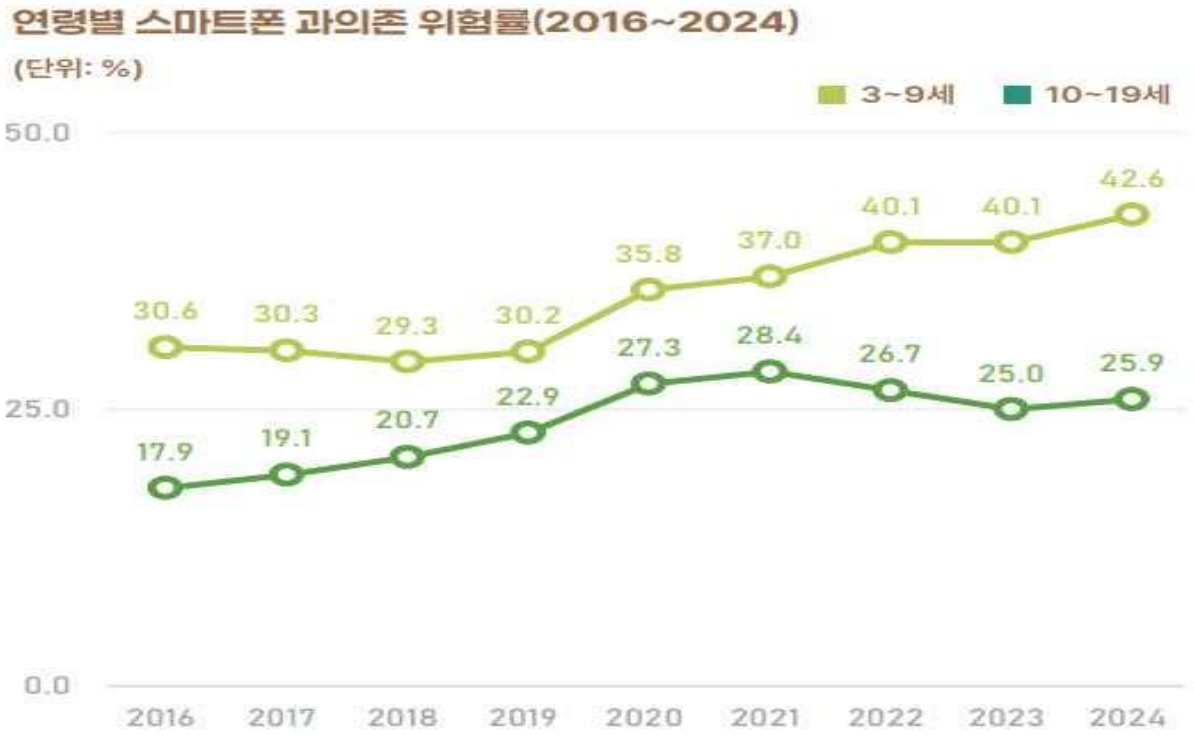
- 평일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42.8%)와 스마트폰 사용(20.1%)에 집중되어 있음.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여주는 **동아리 참여율은 2017년 이후 모든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은 2023년 6.9%에 그침.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50.3%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임

바. 안전 · 위험행동

-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4년 22.6%로 2022년 16.3% 대비 6.3%p 증가했으며, 피해 유형 중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9.1%이 높은 수준임

-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24년 **42.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위험률이 증가하여 중·고등학생과의 차이가 감소함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사용자군보다 높은 디지털 역량을 보였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 숙련도와 건전한 사용 습관이 별개의 차원임을 시사함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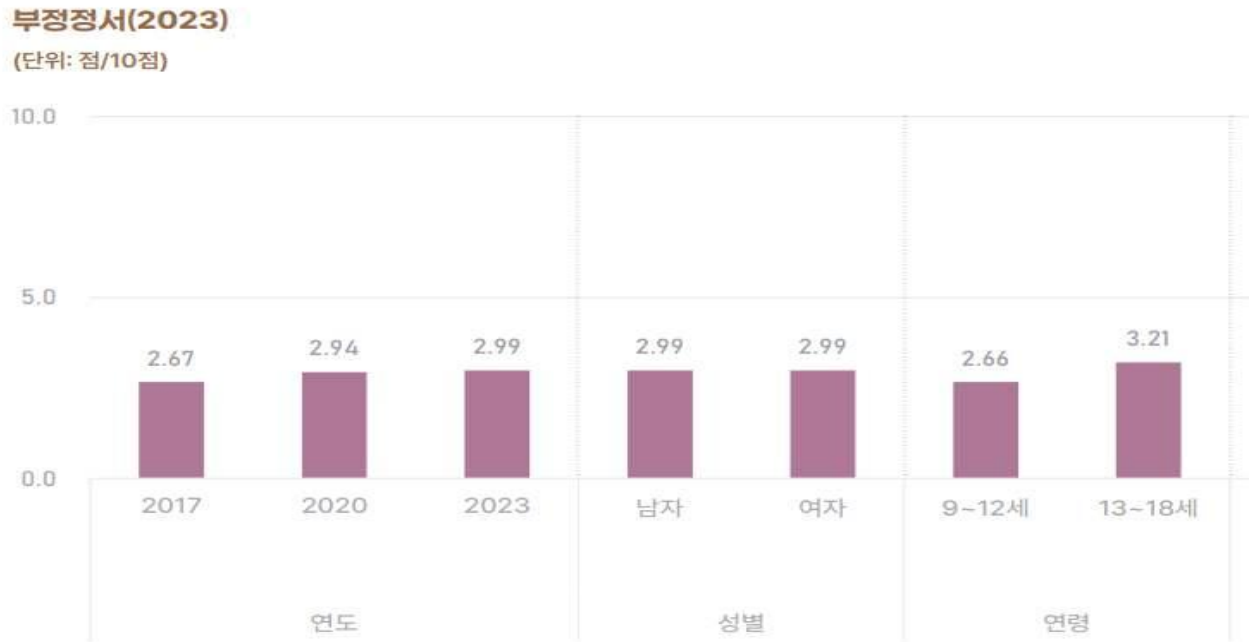
- **가출 경험률**은 **2024년 3.0%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중학생의 가출 경험률(4.0%)이 고등학생(2.9%)보다 높음. 소년범죄 발생률(14~18세 대상)은 2023년 862.1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재산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짐

사. 관계

- 만 05세 아동이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24년 10.9시간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줌.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2023년 7.78점)와 친구관계 만족도(7.68점) 모두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
- 청소년(13~18세) 중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90.1%에서 2ㄹㅈ023년 83.7%로 감소 추세임

아. 주관적 웰빙

-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은 연령이 낮을수록(912세),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삶의 만족도(2023년 6.91점)와 긍정 정서(7.23점)는 2020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 정서(근심·걱정, 우울)는 2017년 2.67점에서 2023년 2.99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93> 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실태조사」참고

- 이는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가 회복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부정정서는 특히 13~18세 청소년(3.21점)과 **200만 원 미만 가구 아동·청소년(3.7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청소년(15세)의 삶의 만족도(65%)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시사점>>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등]

가. 전북지역 청소년 삶의 질 현황

○ 전북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북 지역 청소년의 14.0%('24년 기준)**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전국 평균인 12.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러한 높은 자살생각률은 도내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이 전국 평균보다 심화되어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역 청소년 삶의 질 현황 분석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연구 시사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적 과제

○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 및 통합서비스 구축**

- 스트레스 인지율, 범불안장애 경험률, 부정 정서 증가 등 정신 건강 지표의 악화 추세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심화를 보여줌. 특히 전북 지역청소년의 높은 자살생각률은 도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 발굴 및 심층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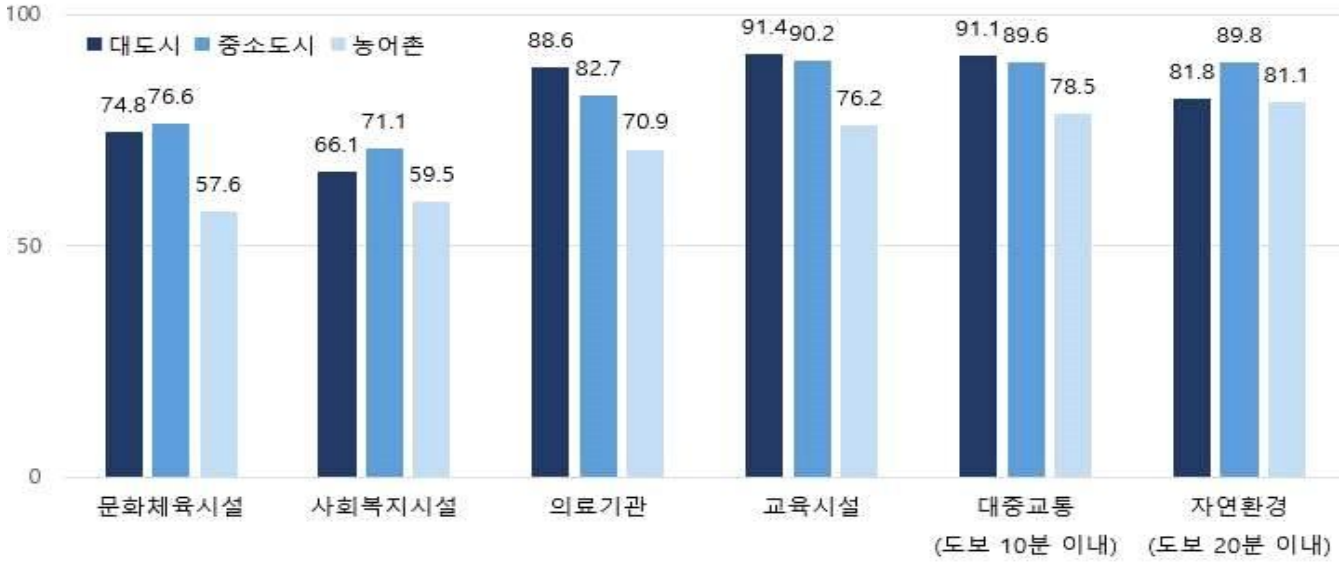
○ **지역 및 계층별 삶의 질 격차 해소 노력**

- 농어촌 지역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임. 전북 지역 역시 농어촌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 격차 문제가 뚜렷하게 존재함

- 농어촌 지역의 낮은 편의시설 접근성(**문화체육시설 17.2%p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특화형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노력이 필요**함. 물질적 결핍 지수에서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삶의 공간 파악 및 정책 반영이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 정책 소관부서의 핵심 과제임

< 지역규모별 거주지역 편의성 (2023)>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질 2025 보고서 p.37>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참고

○ **디지털 환경 위험 대응 및 질적 격차 해소**

-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이 4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대응하여 높은 디지털 역량을 창의적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회 보장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라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 능력이 새로운 디지털 격차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책 소관부서와 교육청은 경제적 접근성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 결과의 지속 가능한 정책 환류 체계 구축**

- 최근 개최된 전북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결과 포럼(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25.11.27.)의 결과를 실제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전북형 성장지원 모델**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

2.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 전략 연구[전북연구원, '25.12.]

<< 연구요약 >>

◇ 이 연구는 청소년 인구 감소와 정책의 분절화 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통합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을 제안함. 연구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2040년까지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인구 감소율(-52.5%)이 예측되는 전북의 정책 실태와 수요를 심층 분석했음. 최종 비전은"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으로 수립됨.

◇ 정책적 함의로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마련**,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코디/사무국) 배치**, 그리고 광역 단위 네트워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함. 보고서는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3대 정책 방향과 총 17개의 세부 추진 과제(안)를 통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정착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함

1. 배경 및 목적

○ 청소년 인구(9~2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보호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 심화 및 성장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정책적 수요 또한 복합적·다변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청소년기관이 개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여 **서로 분절적·파편화**되어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저조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특히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통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안**함

○ 궁극적으로 전북의 청소년 인구 감소세와 다부처 사업의 연계·협력 역량 부족이라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요약)

가.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및 법적 환경

- '청소년 성장지원'은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 신체, 정서, 사회성, 학습, 진로, 시민성 등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의미함
- 이는 단순히 학업 성적 향상을 넘어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 발달**을 추구하는 개념이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협력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현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상위 법령이나 단일 자치법규는 부재한 상황**이며, 추진 근거는 주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8조) 등에 간접적으로 의존함

나. 전북 청소년 인구 특성 및 정책 실태의 한계

-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1318세) 인구 추계를 보면, 전북은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인구 감소율이 **-52.5%로 전국 시도별 감소율 중 가장 큰 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2025년 기준으로 전북 청소년 인구의 **73.7%가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남
-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전북 지역 청소년 환경의 구조적 한계는 **청소년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부족**, 청소년 문화 환경의 지역 격차 심화,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예산 이원화로 인한 정책적 공백 발생**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 증가**(우울, 불안, 중독 등)와 여가·문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이 주요 이슈로 지적됨

다.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및 주요 전략 과제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비전은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전문성 기반 심리·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증가하는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익산, 2027년 개관 예정)를 광역 허브로 하여 **광역-기초-학교를 잇는 심리·정신건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기 과제로 제시됨
-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 성장지원 연속 사업 추진**: 청소년의 발달 과업에 맞춰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 전환기까지 지역 정착과 연계된 **진로, 체험, 취업 기회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정주 의식을 심어주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더-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 청소년(13~18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여 학습 만족도와 정주 의향을 높이는 단기 과제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폐교, 빈 상가 등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습, 여가, 창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인프라를 확충함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개정) 마련 필요
2) 성장지원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코디) 배치**와 장기적으로 **사무국(팀 구성/중간 지원조직) 조성** 필요
3) 성장지원 정책의 예산·행정력 안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필수 연계·협력** 대상
4) **광역(도) 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으로 기초단위의 성장지원 정책 일관성·자원 효율적 배분·네트워크 안정화 및 실행력 확보 필요

나.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안)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으로 비전 수립, 3대 정책 방향을 토대로 총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	▸ (단기)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시·군) 모집 공모 추진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단기)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컨설팅단 운영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포럼
	▸ (중기)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공동사업 운영
	▸ (중기) 전문성 기반 심리·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 (중기) 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성장지원 연속 사업 추진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 기반 구축	▸ (장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조성 (조례 개정)
	▸ (단기) 성장지원 네트워커(전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중기) '(가칭)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사무국/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 (단기)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 추진사업(글로컬·RISE·교육발전특구 등) 간 유기적 연계 사업 추진
청소년 체감형 및 지역 정착 성장 환경 조성	▸ (단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더-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 (단기) 찾아가는 청소년 창의·진로 메이커스페이스
	▸ (단기) 청소년 디지털 ·AI 리터러시 부트 캠프 : 미래 역량 UP!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
	▸ (중기) 지역 현안 해결 중심 청소년 마을 성장 프로젝트 정례화

<출처: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 전략 연구, 전북연구원('25.10.) 요약(i)참고>

3. 진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언[전북연구원]

-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방안 -

<< 연구요약 >>

◇ 현재 구조는 실질적으로 5극 중심이 됨에 따라 전북이 재정특례 부재·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위험이 큼

◇ 법·제도 보완 및 개념적 명료화를 통해, 전북 핵심사업이 초광역권사업으로 인정되어 패키지형 지원·재정확대·협약 체계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함

1 들어가며: 5극 3특에서의 제도적 재정 사각지대에 놓인 3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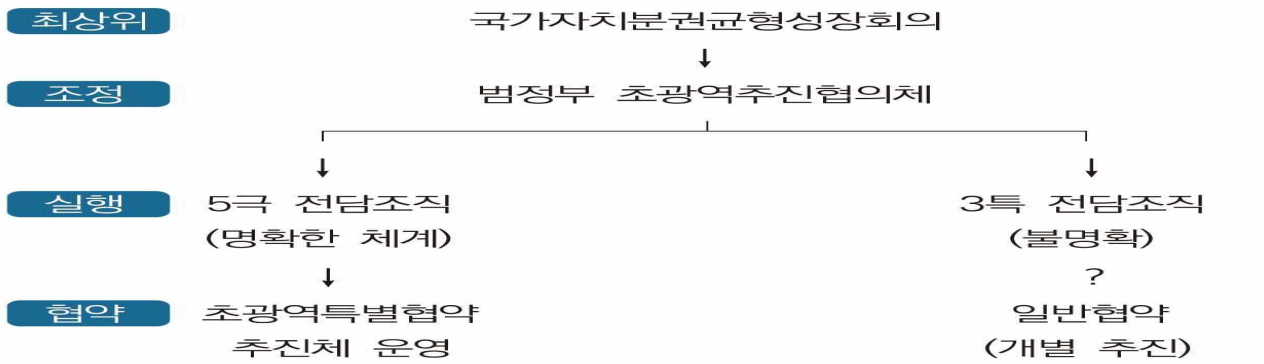
○ 명칭은 '5극3특'이지만 실제 추진은 5극 중심·3특 주변부 구조로 설계됨. 지방시대위원회 설계도는 3대 분야·11개 전략·144개 과제를 제시했으나 실행의 무게가 5극에 실림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이 명시되었으나 여기에 3특 포함 여부 및 방식이 불명확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임

2 현황 분석

○ 5극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반의 원스톱 패키지형 협약(초광역특별협약)으로 다부처 동시 협상 구조를 갖추지만, 3특은 부처별 개별 대응이 어려움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에 대한 재원 및 규모, 배분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3특 몫은 불투명함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 및 3특 수혜 여부>

전략사업	총투자규모	5극 배분	3특 배분	전북 수혜 가능성
AI혁신거점 조성	3.1조원	광주·대구·경남	전북(일부만)	△
광역교통망 구축	미정	CTX, BRT 등 명시	개별 도로·철도만	✗
지역성장펀드	3.5조원	"권역별 조성" 명시	언급 없음	✗

3 법제적 검토 :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정 필요성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자체 간 협의'를 초광역권 요건으로 규정하여 단일 광역단체인 3특은 거버넌스가 계획된 5극에 비해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전북의 새만금·AI 농생명벨트·탄소소재 클러스터 등 사업은 실질적으로 광역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법상 '초광역권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전북이 현재 추진 중인 광역사업들>

사업명	사업 범위	초광역 성격	법적 지위
새만금 개발	전북-충남 연안	O	✗ 광역적 일반사업
서해안 RE100 산단	서해권 전체	O	✗ 광역적 일반사업
AI 농생명벨트	전북-전남 연계	O	✗ 광역적 일반사업
탄소소재 클러스터	국가 거점	O	✗ 광역적 일반사업
호남권 메가시티	2개 시도 협력	O	✗ 광역적 비법정

4 법·제도 개선 방향

○ 법개정(안): 제2조 제7호에 '특별자치도 독자 전략권역(특별광역권)'을 신설하여 3특도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을 가능하게 함

<지방균형발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다.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하 특별광역권)

○ 제도개선(안): 초광역특별계정을 부처직접편성 + 지자체 자율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개편하고, 3특 최소 배분비율(예: 20%)을 운용지침에 명시함

<5극3특의 비전 실현을 위한 초광역계정 신설(안)>

구분	지역자율 계정	지역자원 계정		초광역 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시·도 자율편성사업	-		초광역권 사업(5극)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	특별광역권사업(3특)
부처 직접 편성	-	부처직접 편성사업		권역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직접 편성

5 결론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구조는 실질적으로 5극 중심이 됨에 따라 전북이 재정특례 부재·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위험이 큼

<법개정 시 전북자치도 변화>

구분	현재 (법개정 전)	법개정 후	예상 효과
정책 지위	제도적 사각지대	초광역권 인정	정당한 정책 수혜자
재정 지원	일반 지특회계, 불명확	초광역특별계정 포함	연간 수천억원 추가
사업 방식	부처별 개별 대응	패키지 통합 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
협약 체계	불명확	초광역특별협약 참여	다부처 동시 협상 가능
주요 사업	지역사업 수준	국가전략사업 인정	새만금, AI 등 탄력

○ 법·제도 보완 및 개념적 명료화를 통해, 전북 핵심사업이 초광역권사업으로 인정되어 패키지형 지원·재정확대·협약 체계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함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국회입법조사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

<< 연구요약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4년 말 기준 0.8%에 불과

◇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축소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 국회는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 2011년 7월 국회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도 개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기준보수)을 고용노동부 고시(「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로 정함

○ 자영업자는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 법 시행령 제56조의19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와 실업급여 보험료율 2%, 총 2.25%를 기준보수에 곱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

○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를 곱한 금액만을 보험료로 내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비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임

<자영업자 피보험자 고용보험료>

(단위 : 만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	208	234	260	286	312	338
월 보험료	4.095	4.68	5.265	5.85	6.435	7.02	7.605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같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다만 구직급여 중에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과 같은 연장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정한 폐업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음

○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로 받으며, 「고용보험법」 제69조의5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 기초일액은 '기준보수 × 피보험기간 개월수 ÷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하며, 예컨대 기준 보수를 1등급으로 한 피보험자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기초일액은 (182만 원 × 36) ÷ (365 × 3) = 5만 9,835.6원

○ 이렇게 계산된 기초일액의 한 달 치는 기준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한 달 치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까움

○ 한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소정 급여일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법 제69조의6 및 [별표 2]에 정하고 있음.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근로자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자격 없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신규 가입자 수는 5,080명에 불과하였음

○ 국회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6년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12조의3(현재는 제12조의7)을 신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7년 12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그런데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고시 개정(2019년 12월, 2022년 11월, 2024년 1월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확대하였다. 2024년 2월 개정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기준보수 1,2등급), 60%(3,4등급), 50%(5~7등급)를 고용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지원함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 후 2018년에 신규 가입 자영업자 수는 7천 명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만 명을 넘어섰음

○ 2020년 1만 6,251명으로 증가한 신규 가입자 수는 2021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24년 1만 8,463명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2025년 들어 8월까지 1만 4,798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였으며,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가입 유지자 수는 2025년 8월 현재 5만 9,519명을 기록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신규가입	7,279	10,050	16,251	15,970	16,317	16,902	18,463	14,798
가입유지	18,265	22,529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59,519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2025.10.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2023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이후에도 유지되어 2025년 7월 현재 3만 5,133명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

○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짐에 따라 지원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비율을 크게 높인 2024년의 지원금액은 2023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02억 5,300만 원을 기록하였음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수와 지원금액>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수	2,489	5,547	10,145	14,679	18,012	24,884	31,162	35,133
금액	437	1,040	1,731	2,467	3,310	4,514	10,253	7,241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 2025.10.

3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기업 764만 1,749개 중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674만 7,159명에 달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가 5만 3,705명이므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며,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임

○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인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에 홍보비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고, 국세청과 협력하여 사업자등록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신규 가입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기가입자 중에서 신청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피보험자가 여전히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소상공인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아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도 개선해야 하며,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실직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는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노동자보다 6개월 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므로 자영업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가입 기간별로 30일 또는 60일씩 짧다는 것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자 고용보험제도에 비해 불리한 점임

○ 노동자의 1.8%보다 더 높은 2%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를 노동자보다 짧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마며, 기준보수가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기준보수를 조정하거나,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자영업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고,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실업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영업자 수급자격자에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영업자도 0.2%의 보험료율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

○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거나 재창업할 수 있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성 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도입되었음

○ 그런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는 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도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안정적인 육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자인 피보험자와의 형평성, 쉽게 휴업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다섯 단계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윤석열 정부의 53번째 국정과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포함된 과제 중의 하나임

○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 기여 기간, 구직급여 등에 있어 노동자와의 격차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처럼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 함

○ 기준보수가 아니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실제 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임

○ 당연가입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2.25%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충분히 낮출 필요가 있음

○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월 보수액 기준에 따른 등급(1~2등급: 80%, 3~5등급: 60%, 6~8등급: 50%)을 통하여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5,3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5년 예산안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규)” 사업으로 300,000천원(도비)을 편성하였음

- 고용보험 : 보험료 20% 지원(정부지원금 50~80% 지원)
- 산재보험 : 보험료 50% 지원(정부지원금 없음)

○ 하지만 전북자치도 ’25년 9월 기준 추진실적은 고용보험은 174명, 산재보험은 32명 가입을 지원하여 전체 사업실적은 17.5% 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5년 제3회 추경안**에서 **2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26년 예산안에도 100,000천원이 편**성되었음

○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5)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 1,000개로, 전체 소상공인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사업자 폐업 인원이 2024년 92만 5,351명에 달하였고 2020년 이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그런데 현재 정부의 지원과 전북자치도의 지원액을 살펴보면 1~2등급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3~4등급은 20%, 6~8등급은 3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부담료 비용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진원)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보험료의 20%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험료의 80%		보험료의 60%			보험료의 50%	

※ 출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 참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를 폐업 또는 노령, 회생파산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경우 2025년 8월 기준 가입인원이 183.8만명, 납부금 총 규모가 30조 7,463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요약 >>

◇ 지방자치의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실현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정적 자율성 확보 필요

1 배경 및 문제 인식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

○ 중앙집권적 통치와는 달리 지방자치는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이라는 세 가지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함

○ 지방정부에서 독창성을 발휘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획일적이지 않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주민 복지를 제고할 수 있음

- 따라서, 독창성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혁신을 결합해 지방자치가 단순히 분권적 제도 운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줌

○ 지방정부에서의 차별성은 단순히 외형적 구분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임

- 분권화가 확산된 상황에서의 차별성은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토대가 됨

○ 지방정부에서의 주체성은 중앙정부의 단순 집행자를 탈피하여 지역 특수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역량을 적절히 활용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특성과 추진현황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65조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하며, 지자체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지역정보화라는 명칭과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체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과제를 확인 및 해결하기 위한 계획임

- 초기에는 지자체의 행정업무 관련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중심이었던 기본계획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201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지며 기존 행정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자치법규인 지자체별 정보화조례 제4조 또는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조례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은 명기되어 있지만 기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 급변하는 최근 디지털 속도에 적용하기 알맞은 기간 명기의 검토가 필요함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담당하는 정보화부서는 일반부서를 지원하며, 행정정보시스템, 통신, 보안 등을 담당하는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따라서, 정보화부서에서의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업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지방자치 관점에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자체의 디지털 기반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을 담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해당 지자체의 독창성 있는 계획인 지와 지자체 자체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추진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타 지자체 사업들과 유사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해 독창성과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한국의 전자정부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관련 시스템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구축되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게 됨

2 주요내용: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독창성·차별성

○ 중복분석 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117개 과제 중 중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36개 (30.8%)에 그쳤지만, 단일 지차제가 추진하는 과제는 81개 (69.2%)로 광역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과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67개 과제 중 중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19개 (28.4%)이며,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제는 48개 (7.6%)로 특정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대다수를 차지함
- 약 70%의 과제가 단일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별 특수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독창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나타냄

〈표 1〉 중복분석 결과

구분	총 과제 수	4개 지자체	3개 지자체	2개 지자체	1개 지자체
광역	117	2(1.7%)	11(9.4%)	23(19.7%)	81(69.2%)
기초	67	0(0.0%)	5(7.5%)	14(20.9%)	48(71.6%)

○ 유사도분석 결과

- 모든 광역자치단체 지역 간 유사도 값이 0.4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 설계를 보여주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지역 간 유사도 값은 0.164~0.257 범위에 나타나며 광역자치단체보다 과제 차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지자체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광역	부산	1	0.261	0.228	0.369
	대구	0.261	1	0.359	0.229
	인천	0.228	0.359	1	0.190
	경기	0.369	0.229	0.190	1

	구분	수원	창원	안양	광주서구
기초	수원	1	0.228	0.257	0.202
	창원	0.228	1	0.164	0.242
	안양	0.257	0.164	1	0.218
	광주서구	0.202	0.242	0.218	1

○ 군집분석 결과

- 군집분석을 통해 과제 구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지자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음으로써, 정책 추진 방식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평가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와 인천이 결합해 과제 구성의 유사성을 보이고, 부산과 경기가 결합하였음
- 기초자차단체의 경우, 수원과 창원의 과제 구성의 유사성이 높고, 후에 안양이 군집에 합류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광주서구가 군집에 합류하였음
- 종합적으로, 지자체 간의 부분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최종 단계에서의 결합 거리가 크고 수행 규모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이행과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 단계별 군집 결합(Ward 방법)

〈광역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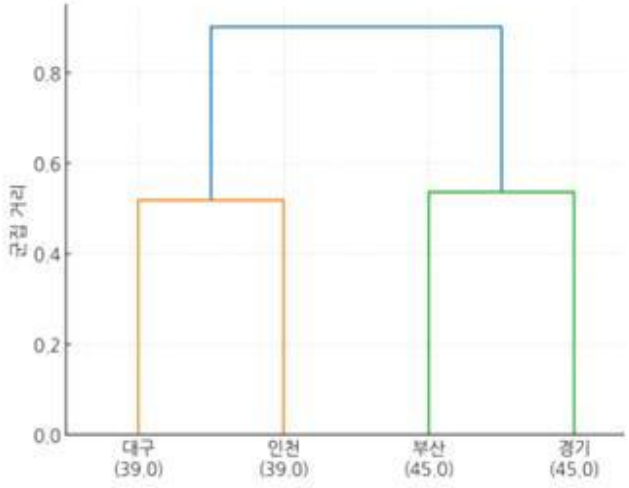
단계	결합군집	군집거리	군집내 사례수
1	대구-인천	0.518	2
2	부산-경기	0.536	2
3	(대구·인천)-(부산·경기)	0.90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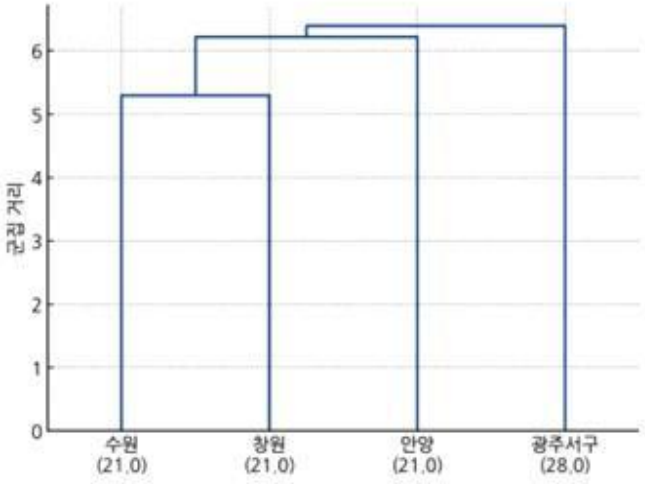
* 군집별 평균 수행 빈도: 대구·인천(39.0), 부산·경기(45.0)

〈기초자치단체〉

단계	결합군집	군집거리	군집내 사례수
1	수원-창원	5.292	2
2	(수원·창원)-안양	6.218	3
3	(수원·창원·안양)-광주서구	6.390	4

* 군집별 평균 수행 빈도: (수원·창원·안양) 21.0, 광주서구 28.0





○ 다차원척도(MDS) 분석 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대구와 인천이 각각 우측 상단과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네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구성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곳 모두 좌표상 뚜렷이 분리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 거리 관계가 명확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상이한 과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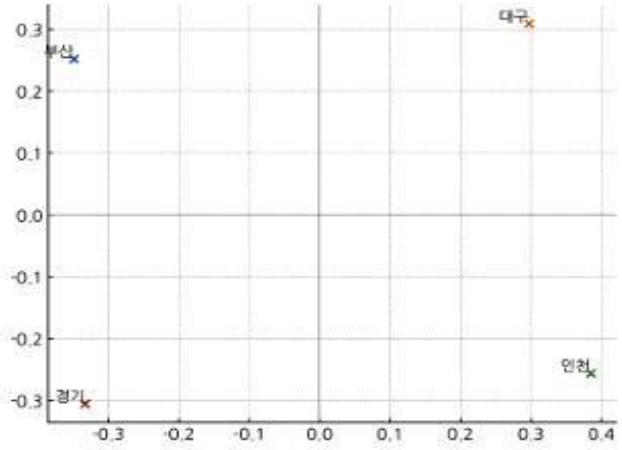
〈표 4〉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 MDS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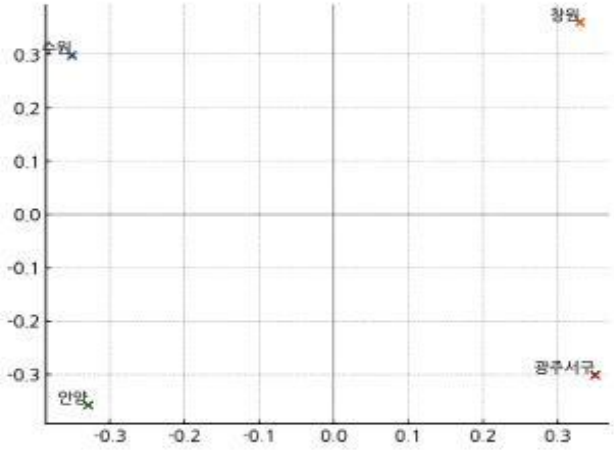
구분	x	y
부산	-0.349	0.252
대구	0.297	0.309
인천	0.385	-0.256
경기	-0.333	-0.305

Stress-1 = 0.128, RSQ = 0.603

구분	x	y
수원	-0.351	0.298
창원	0.330	0.360
안양	-0.329	-0.358
광주서구	0.350	-0.301

Stress-1 = 0.138, RSQ = 0.812





○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 분석 결과, 과제 구성의 낮은 중복성, 제한적 유사성, 부분적으로 군집화 경향이 존재하지만 차별성이 유지되고, MDS 시각화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구분은 지방자치의 지역 간 차별성과 자율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주체성 분석

○ 빈도분석 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 총 117개 중 국비지원 사업은 76건, 자체재원 사업은 41건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재정 의존성은 향후 정책 실행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하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67개의 과제 중 국비 지원 사업은 36건, 자체 재원 사업은 31건으로 비교적 균형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이행과제 대부분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비 확보 여부에 사업 추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도적 사업 추진을 제약할 수 있음

〈표 5〉 빈도분석 결과

〈광역〉

예산구분	건수	비율(%)
국비	76	64.96%
자체	41	35.04%
합계	117	100.0%

〈기초〉

예산구분	건수	비율(%)
국비	36	53.73%
자체	31	46.27%
합계	67	100.0%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보다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가 확정 사업이 아님에 따라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정책 추진안정성의 한계가 존재함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비 지원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예산 요인을 제외한 국비사업의 기본 발생 확률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여부가 예산 외에도 정책 분야, 공모사업 참여 여부, 사업 성격, 지역 전략적 중요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하며 예산 규모와 국비 의존 간 상관성이 존재함을 보여줌

〈표 6〉 광역·기초자치단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B	S.E.	Wald	p-value	Exp(B)
광역	예산	0.000174	0.000073	5.730	0.0167	1.000174
	상수항	0.1330	0.2518	0.279	0.5975	1.1422
기초	예산	0.0013	0.0007	3.800	0.052	1.0013
	상수항	-0.4749	0.3165	2.250	0.134	0.622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예산 규모가 클수록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자체재원 사업 비중이 크지만 대규모 사업에는 동일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분석결과 지자체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정책이 실제 제시되고 있지만 다수의 이행과제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체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격차 완화 장치를 통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미래첨단산업국 외]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기관 정보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공유하였고 2023년 비전 및 목표를 지능정보기술기반 행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 4차산업혁명 기술화를 통한 「ICT융복합기반 지능정보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음

○ 2024년도에는 과기부 주관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3년간 ('24년~'26년) 단계적으로 투입해 '전북 주력 이차전지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6.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내년 학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1. 고교학점제와 학교현장의 혼란

○ 올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고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제도가 시행되고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은 제도 시행에 대해서 현실과의 괴리, 교·강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교육과정 등 핵심 쟁점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원래 고교학점제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출석만이 아닌 최소 성취도 기반의 졸업·진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었고 6년간 연구학교 등 준비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져 학교 현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내년 학기 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보고,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내년 학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 교·강사 인력 확충

○ 고교학점제의 특징 중 하나가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기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목별 학생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2026학년도 중등교사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1,600여 명(30%)이 증가한 7,141명으로 수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역순회교사를 충원하여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현재 증원 규모로는 여전히 부족하며 단순 증원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교원의 구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여론 설득,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등 현실적인 장애요소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 최성보 및 이수제(미도달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국교위에서는 ① 공통과목은 학업 성취율 및 출석율을, 선택과목은 출석율을 적용하는 방안, ②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기존과 같이 출석율로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2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 반대측에서는 사실상 학점제 폐지로 볼 수 있고,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현장에서 '책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평가 왜곡을 야기하거나 미달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출석율로 환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신속하게 정리 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교위에서는 면밀히 심사하되 연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 현재 고1학생이 올해는 공통과목을 이수하지만 고2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과목 중심으로 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2026년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상대평가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

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
2015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2022	공통과목, 일반.진로선택, 융합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 제외 전체	융합 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 한정

자료: 김주영,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II) 자료집」 2025.11.6.

○ 물론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절대평가로 인해 내신이 무력화되어 일반고나 지방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도입은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환원하는 문제가 현재 국교위에서 최성보 논의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는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3. 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

(1) 온라인학교 학점 이수의 신뢰 확보

○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온라인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학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도 취지 중 하나가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임에도 학과목 개설이나 대입에서 오히려 소규모학교나 지방 농·어촌학교가 불리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 대학의 온라인 학점인정 논란, 최근 대학의 온라인 수업 부정행위사건 발생 등 온라인 수업 자체에 대한 불신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온라인학교 이수학생 및 학점에 대한 불이익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온라인학교를 차질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 제도 시행으로 학교·과목 선택이 복잡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이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에 더욱 의지함으로써 공교육 강화 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3개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70.13%(1,045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과목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내신등급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면서 1등급 학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한편 1등급과 2등급 간의 격차가 벌어져 1등급을 받기 위한 상위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최소 2등급을 확보하려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교육비 대책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해 현재의 과목선택형에 일부 과정제시형을 가미하는 정책도 검토할 수 있다.

(3)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 대입전형은 학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4년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올해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은 어려우나, 고교학점제와 대입전형과의 연동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입전형에 대한 교육부 내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후속조치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논의 등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학생선발권을 가진 대학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 선발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무전공 입학'이 기존의 4배로 대폭 확대되면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과목 선택을 하도록 설계된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물론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이나 조기 전공선택의 오류 등을 고려한 취지라는 것은 이해되나, 고교학점제와 무전공 입학이 공존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교사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 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대입전형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체적인 교육정책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의 집행 가능성 제고 및 지역주도 사업추진체계 수립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분석 / 2025.10.) –

(1) 현 황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국내 강점 산업에 특화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제어, 표준화 등) 개발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및 AI메타팩토리 기반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신규로 4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	-	-	40,000	4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혁신도전형 협업지능 피지컬 AI 연구개발에 181억 6,000만원, 기술확산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에 74억 4,000만원, 피지컬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化에 135억 6,000만원, 사업단 운영에 8,4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명	예산안	산출내역
혁신도전형 협업지능 피지컬 AI 연구개발	18,160	10개×2,450백만원×9/12 =18,160백만원
기술확산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	7,440	12개×825백만원×9/12 =7,400백만원
피지컬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化	13,560	8개×2,260백만원×9/12 =13,560백만원
사업단 운영(글로벌 연구협업생태계 수립 등)	84	1식×1,175백만원×9/12 =88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의 5년간(2026~2030년) 총사업비는 1조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며, 국고는 6,000억원(60%), 지방비는 1,500억원(15%), 민자는 2,500억원(25%)이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총사업비]

(단위: 억원)

내역명	국고	지방비	민자	합계
합 계	6,000	1,500	2,500	100,000
협업지능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4,000	-	1,485	5,485
혁신도전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 (10개 총괄, 47개 세부과제)	3,000	-	985	3,985
기술확산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 (1개 총괄, 50개 세부과제)	1,000	-	500	1,500
핵심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클러스터화 추진	1,760	1,495	1,000	4,255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3개 시설 구축)	-	1,395	900	2,295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화 추진 (50개 핵심장비, 5개 테스트베드 구축)	1,760	100	100	1,960
사업단 운영	240	5	15	26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은 전북을 지원하며, 전북은 현대자동차·타타대우상용차 중심으로 부품 협력업체 등의 지역특화 산업이 있으며, 상용차·전기차·수소차 생산기지, 특장차 클러스터 집적(약 570개社), 전북혁신도시 인근 부지확보(약 6만평)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 사업은 이를 기반으로 농기계·특장차 등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 예정이며, 피지컬AI 기술의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및 실증·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분석의견

○ **첫째, 사업계획,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성과 전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예산집행 이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때 9개월 소요예산 편성은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 정부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적 추진이라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의결하였으며,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2026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4월초까지 연구개발기관 공모·선정을 통해 4월 중에는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추진일정(안)]

일정	추진 내용
'25년 9월~'26년 2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3월 초	사업계획 수립
3월 중	과기정통부-NIPA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3월 중~4월 초	사업 공고 및 신청, 계획 검토
4월 중	NIPA-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4월말~12월	사업 운영 및 관리
'27년 1월	사업 성과 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6개월로 계획하였으나 보통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장비의 경우 2026년 3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르면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므로, 해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정기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3월, 6월, 9월)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후 지방의회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며 통상 제1회 추경은 3월에 제출하여 5월에 의결된다.

[정기심사 일정(중앙의뢰심사 기준)]

구분	시·도 의뢰심사 (시·군구 → 시·도)	중앙의뢰심사 (시·도 → 행안부)	심사	결과 통보
제1차	1월 15일까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4월 중순
제2차	4월 15일까지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7월 중순
제3차	7월 15일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중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은 사업 첫해로 9개월분의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투사심사 등 관련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8개월이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고, 타사업은 4~4.5개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9개월치 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 특히, 지방비로 추진되는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3개 시설 구축)의 경우 부지매입, 설계, 착공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사전절차 일정을 고려하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은 연구클러스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되므로 국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이를 고려하여 사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3개 시설 구축) 개요]

구분	피지컬AI 공동 연구개발센터	피지컬 AI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피지컬AI 실증 메타팩토리 (테스트베드)
연면적	11,880m^2	5,940m^2	5,940m^2
사업비 (현금기준)	460억원	300억원	300억원
	※ 현물 1,235억원		
규모	지상 5층(지하 1층)	지상 4층(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연구기관 입주공간 • 우수기업 입주공간 • 융합기술사업단 입주 • 편의시설 등	• 국산 NPU 실증센터 • 데스트베드 통합관제센터 (DCC) • 연구용 고성능 컴퓨팅 센터	• AI 메타팩토리 실증센터 -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6개존) - 메타팩토리 가상환경 실증 및 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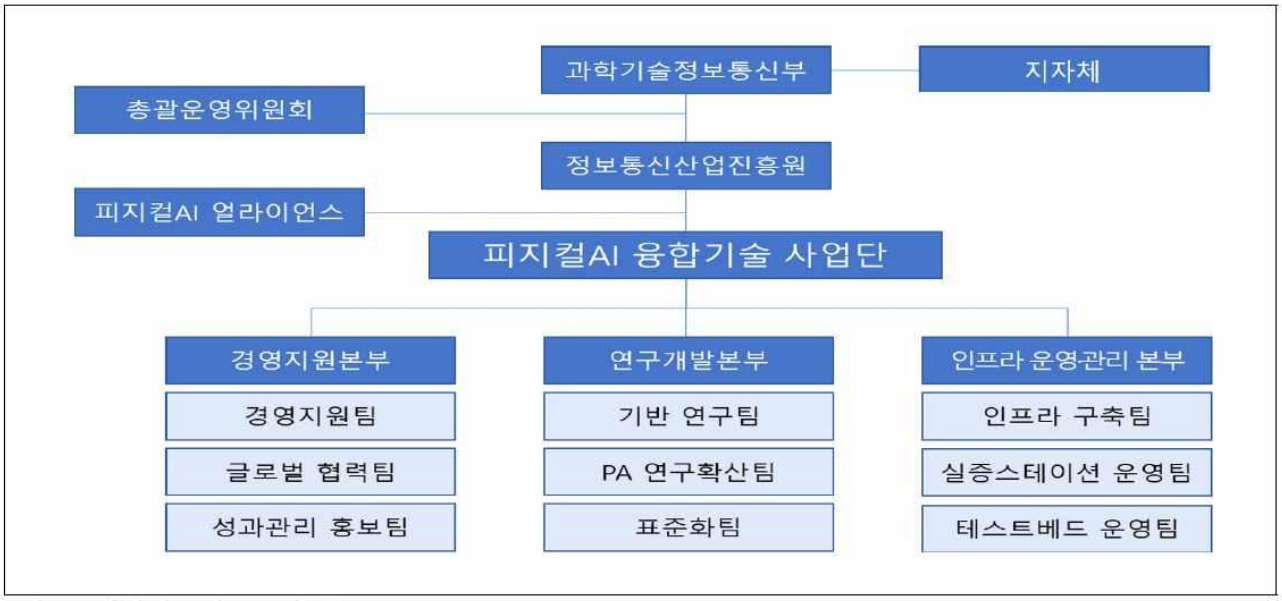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예산집행 이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관련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9개월 소요예산 편성은 연내 집행이 어렵고,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비 추진 사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국고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출연기관 산하 부설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사업단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과기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에 사업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6~2030년 동안 사업단 지원 예산은 총 260억원이 소요되며, 국고로 240억원(92.3%)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5억원, 민자 15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러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전북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피지컬AI 기술의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및 실증·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방 출연연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국고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 참고로,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의 경우 광주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광주시 출연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구인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이고, 사업단 지원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국고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출연기관 산하 부설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사업단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검토한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ratio가 0.945로 1을 넘지 못하였으며, 편익을 과다하게 산정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검토한 기획보고서에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ratio가 0.945로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비용은 1조원이며, 이를 2024년 기준 현재가치로 변환하면 8,292억원이며, 2034~2040년간 총 1조 4,019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이를 2024년 기준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7,839억원 규모이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단위: 억원)

구분	현재가치 합계		편익/비용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편익	비용		
값	7,839	8,292	0.945	△45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편익 산정 시 유사한 AI피지컬 개발 사업인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보다 사업 기여율, 사업화 성공률 등을 높게 설정하여 편익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동 사업에서는 사업화성공률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피지컬 AI 산업은 국내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술수준 또한 성숙하지 않아 자체적인 성과현황을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에서는 유사 분야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근거로 활용하였으나, 동 사업에서는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과 같은 사업화 성공률이 다소 높은 분야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교]

구 분	사업 기여율	부가 가치율	R&D 기여율	사업화 성공률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44.1%	64.4%	35.4%	43.3%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	32.3%	63.2%	35.4%	22.5%
※ 편익 산출식 편익 = 국내 피지컬AI 시장 규모×사업기여율×부가가치율×R&D기여율×사업화성공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검토한 기획보고서에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ratio가 0.945로 1을 넘지 못하였으며, 편익을 과다하게 산정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10.) -

가. 현 황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 환경·문화자원별 특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콘텐츠, 인력, 공간을 통합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지원 계정으로 신규 편성되었다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지역자율 계정으로 이관되었다.

[2026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	37,000	37,000	500	△36,500	△98.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문체부는 기존에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를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1~4차)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6년 예산안에도 3~4차 문화도시 12개 지역의 연간 사업비 지원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자율) 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도시 조성	34,500	25,500	25,500	18,000	△7,500	△29.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4차 문화도시(24곳) 사업 대비, 권역별 13곳을 지정하여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 도시를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13개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정된 각 지자체에 최대 200억원(지방비 50%)를 지원하여 문화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비교]

구분	문화도시(1~4차)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현황	**총 24곳 지정** ‣ (1차/ '20-'24년) 서귀포시, 청주시, 포항시, 영도구, 부천시, 원주시, 천안시 ‣ (2차/ '21-'25년) 춘천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강릉시 ‣ (3차/ '22-'26년)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 (4차/ '23-'27년)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시, 의정부시, 칠곡군	**총 13곳 지정('25-27년)**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 (경기권) 안성시 ‣ (충청권)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 (강원권) 속초시 ‣ (경상권)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 (전라권)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진도군
지원 규모	‣ 지역별 5년간 150억 * 지역별 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원	‣ 지역별 3년간 200억 * 지역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지원
지원 방식	- 기초지자체 중심 도시계획 지원 *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화 가치 증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	- 전국 문화균형발전 위한 권역별 지원 *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① 지자체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성계획 승인, ③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④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사업은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지원계정 사업의 실집행률(2025년 8월 기준)이 24.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지원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각 부처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부처에서 그 집행 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지역자율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메뉴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편성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별도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게 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 계정별 예산편성]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포괄보조금 방식)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 사무수행경비
	시·군·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 직접편성		-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되고,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된다.

○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2025년 대비 73개 증가한 125개 사업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동 사업 또한 2025년 8월 기획재정부가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는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다.

○ 올해 4월 기재부가 통보한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예산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편성하여 당초 자율계정 이관 사업은 10개였으나, 기재부가 8월 지역자율계정 이관 사업을 기존 대비 63개 추가하면서 다시 개별적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문체부 사업 중 2026년 예산안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추가 이관된 사업은 9개이다.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추가 이관 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이상 3개 사업은 이관 후 '광역관광개발' 세부사업으로 통합),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관광자원 기반조성,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총 9개)

자료: 기획재정부

○ 그런데 기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역지원계정 사업의 2025년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을 보면, 올해 예산 370억 원 중 90억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4.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역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37,000	37,000	24,890 (9,009)	24.3	-	-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또한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보면 진주시의 경우 교부액의 78.0% 실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홍성군은 0%, 속초시는 3.0%에 불과한 등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순천시(76.1%), 전주시(74.0%)와 같이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 반면, 안동시(16.4%), 안성시(20.1%)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역지원) 사업 지자체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지자체	교부일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 7. 9.	2,000	63.9	3.0
경기도	안성시	2025. 3. 7.	2,100	423	20.1
경상남도	진주시	2025. 3. 7.	2,100	1,637	78.0
경상남도	통영시	2025. 3. 7.	2,100	1,120	48.4
경상북도	안동시	2025. 3. 7.	2,100	351	16.4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 3. 7.	2,100	1,121	53.4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5. 3. 7.	2,100	1,115	53.1
세종특별자치시	-	2025. 3. 7.	1,500	535	35.7
전라남도	순천시	2025. 3. 7.	2,100	1,598	76.1
전라남도	진도군	2025. 7. 9.	1,515	813	5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3. 7.	2,100	1,553	74.0
충청남도	홍성군	2025. 7. 9.	1,675	0	0.0
충청북도	충주시	2025. 3. 7.	2,100	959	5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자체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하반기에 주요 사업에 착수하는 경향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지자체 예산 편성의 지연, 그리고 일부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비 매칭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 지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 8월 기준 6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20%대 미만(이 중 1곳은 실집행률 0%)이라는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이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역 내 문화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성과도 지자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확보 난항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

○ 이처럼 지역별 실적 차이가 크고 전반적인 집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역자율계정의 2026년도 예산안은 46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지역지원계정 예산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도시 조성	34,500	25,500	25,500	18,000	△7,500	△29.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따라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자체의 관심 저하, 지방비 확보 곤란으로 인한 과소투자 등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법안과 연계 심사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6년 예산안 분석 / 2025.10.)

가. 현 황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보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703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6년도 유아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470,335	470,33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 **2026년도 예산안은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과 일반회계의 보육 관련 사업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바, 영유아특별회계 설치법안 심사와 연계하여 영유아 교육, 보육 관련 사업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은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3~5세)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2016.12.20.)되어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 운용 중이다. 같은 법은 한시법으로서 세 차례 개정되어 2030년 연말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2025년도 예산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다.

- 유아교육의 경우와 달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6년도에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 보육 관련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영유아특별회계 편성 세출 사업]

사업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301)	※ 신규 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일반회계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		
보육사업관리(1635-35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1635-354)		
보육진흥원 운영지원(1635-37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641-3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안이 발의(2025.9.16.)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비롯하여 2026년도 예산안의 영유아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은 특별회계 근거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총　　괄　이 정 표 | 입법정책담당관

기획검토　형 영 주 | 자치현안지원팀장

작　　성　김해빛찬 | 자치현안지원팀
송 지 영 | 자치현안지원팀
설 재 영 | 자치현안지원팀
윤 여 성 | 자치현안지원팀
송 다 원 | 자치현안지원팀
권 영 두 | 자치현안지원팀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의회